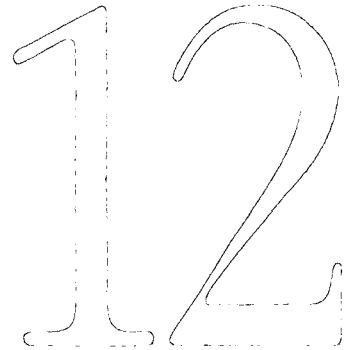


월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현안 분석

순부유세와 그 조세정책적 의의

외국의 탄소세 도입 현황

이코노미스트-그들은 별종인가?

정책 연구

정책 토론 리포트

해외 동향

정책 흐름

재정 통계

소득세관련 통계(II)

권두칼럼

- 2 건전한 납세환경의 조성 / 정영현

현안분석

- 6 순부유세와 그 조세정책적 의의 / 노영훈
22 외국의 탄소세 도입 현황 / 최준욱
30 이코노미스트—그들은 별종인가? / 홍범교

정책연구

- 44 기업의 차입과 세제 / 손원익
48 조세 관련자료 체계의 변천과 개선방향 / 현진권

정책토론포트

- 52 한일조세조약의 문제점

해외동향

- 60 인터넷과 예산 및 조세정보

정책흐름

- 69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현황 및 실천과제
75 최근의 경제동향과 경쟁력강화 시책 추진현황
81 1996년도 3/4분기까지의 국세실적(잠정)
85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89 소득세 조사관리 방향

재정통계

- 95 소득세관련 통계(Ⅱ)

건전한 납세환경의 조성

정영현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미국의 유명한 코메디언인 윌리엄 로저스는 "현재 미국의 소득세제는 골프경기에서보다 더 많이 미국 국민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라고 피력한 적이 있다.

납세자가 주어진 납세환경하에서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당연한 이치이고 나아가 약간의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세무공무원과의 유착을 통하여 절세 혹은 탈세방안을 모색하는 것 또한 편익과 비용의 논리하에서는 합리적인 경제행위라 할 수 있다.

최근 선진 각국은 세제 및 세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자발적 납세협력 수준의 제고」라 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 스스로가 법률에 의해 부여된 납세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게끔 제도와 행정을 개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세당국의 노력없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자발적 납세협력 수준의 제고」의 뒷면에는 공평하고 간단명료한 세제의 확립과 엄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의 운용이라는 필요조건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조한 납세의식 및 기업에 있어서 과도한 준조세 부담과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인 세정 운영은 우리 사회에 탈세관행을 일반화하였다. 한편 조세행정



의 담당자인 세무공무원은 낮은 보수수준, 적체된 인사, 실비에 못 미치는 낮은 업무 추진비와 과도한 업무량 등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부조리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결국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탈세심리에 동조하고, 납세자는 불합리한 세정을 악용하여 상호 조세회피라는 혜택과 일정한 금전적 대가를 교환하는 세무부조리 관행이 구조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도덕성에 호소하여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듯이 미래에도 전혀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무공무원의 청렴성에 호소하여 엄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기대한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하에서 주기적으로 불거져 나오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유착에 의한 비리사건을 접할 때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식의 공허한 논쟁일 뿐 더 이상은 의미없는 작업일 것이다.

건전한 납세환경의 조성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생각 외로 쉽게 그 해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려운 문제는 쉽게 풀어야 하듯이 원칙에 충실한 몇 가지 해법의 핵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와 권리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

세제 및 세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자발적 납세협력 수준의 제고」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전한 납세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며 이는 납세자의 도덕성과 세무공무원의 정령성에 의존해서는 성취하기 어렵다. 건전한 납세환경의 조성은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통한 의무와 권리의 균형점을 찾는 것과 세제의 단순·명확화를 통한 세무 부조리 발생 여지를 제거하는 데서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 지금까지 조세는 조세를 거두는 국가입장에서 경제 사회발전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정책실현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치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조세를 실제로 납세하는 국민의 입장은 등한히 취급하여 납세자의 기본권이 많이 침해되어 왔고 아직도 납세자의 지위는 과세자에 비하여 상당히 열위에 놓여 있다. 근래에 이르러 선진 각국은 세무행정절차의 적정화·투명화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신장하고 아울러 납세자권리의 보장·확립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납세자의 권익보장에 관한 절차규정들을 도입함과 아울러 납세자의 권리선언 내지 납세자권리헌장을 발표하여 정부 스스로가 숭선하여 납세자 권리의 확립에 주력하는 한편 세정을 강화하여 자발적 납세협력 수준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국세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납세자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이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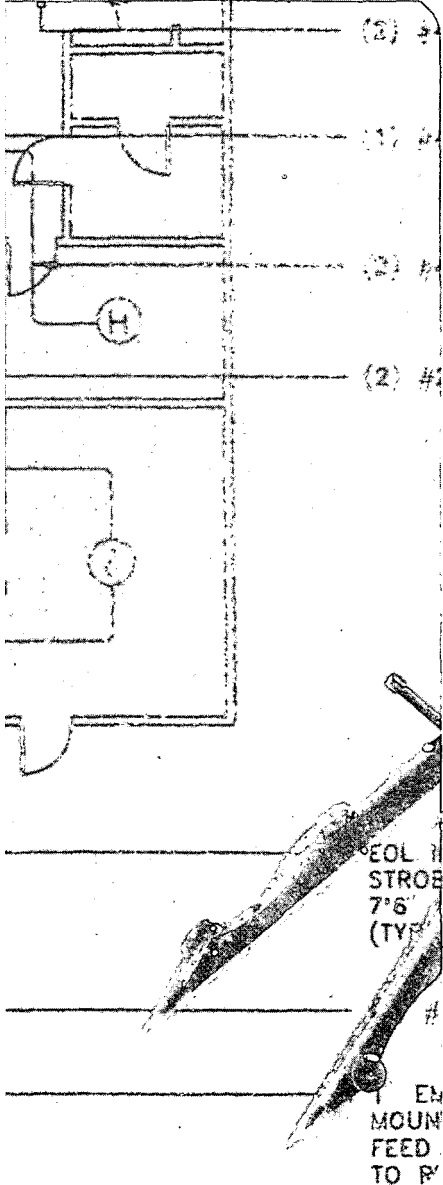
둘째, 건전한 납세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세제 및 세정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일반 납세자에게 심어지도록 노력해서 자연스럽게 세무부조리의 여지를 축소해 나가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단기간에 결실을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세무부조리의 척결 없이는 세무행정의 개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세무부조리를 척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현행 세목별 조직을 납세자 위주의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세무공무원의 재산을 등록·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철저한 사후검증과 관리가 따라야 할 것이며 세무부조리 고발센터를

국세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 상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와 병행하여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의 현실화, 과세자료의 전산화 등 과학화를 통한 업무 부담 경감, 과학적 인사고과제도 도입, 보수지급수준의 현실화 등 세무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기본적으로 납세협력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를 가능한 한 단순·명확화시키는 한편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예측가능성의 확보를 통한 불확실성의 축소와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잘못되지 않은 세제는 가급적 개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빈번한 세제개편은 납세자에게 세제가 불합리하다는 인식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법의 특성상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행사되는 과정에서 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남용될 때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고 조세의 형평과 공평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조세마찰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므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은 엄격히 규정된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협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납세자에 대한 홍보와 함께 미래의 납세자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와 다양하고 간편한 안내책자의 배포를 통해 납세자들의 세금에 대한 거리감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미국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조세교육프로그램을 우리나라도 개발하여 어릴 때부터 건전한 납세의식을 함양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KDF**

현안분석



순부유세와 그 조세정책적 의의 / 노영훈

외국의 탄소세 도입 현황 / 최준욱

이코노미스트-그들은 별종인가? / 홍범교

순부유세와 그 조세정책적 의의

노영훈/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순부유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총자산액에서 부채액을
제외한 순부에 대해
과세하는 일종의
자산과세이다.

I.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세목이어서 일반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감이 있지만, 유럽의 11개 국가를 중심으로 70년 이상의 시행역사를 갖고 있는 조세로 순부유세가 있다. 순부유세는 개별 가구가 소유한 총자산액에서 부채액을 제외한 순부(개인: net wealth, 법인: net worth)에 대해 과세하는 자산과세(asset taxation)의 일종이다. 순부유세는 그 명칭이 부유층에 한정하여 과세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실제 납세의무자는 중산층을 포함하여 상당히 광범위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조세이다.

최근 독일에서는 순부유세의 부과를 위해 자산평가를 할 때 자산종류간에 가치평가의 균일성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세부담 형평성이 문제가 되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져 있을 정도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실정이다¹⁾. 한편 우리나라의 재산보유세는 물세로서의 재산세와 인세로서의 종합토지세가 건물과 토지에 대한 지방세로 존재할 뿐, 순부유세와 정확히 일치하는 세목은 국세와 지방세를 불문하고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순부유세의 개념과 조세정책상 의의를 살펴보고 외국의 순부유세제도와 시행경험을 정리한 후, 우리나라에서의 시행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II. 순부유세의 조세정책적 의의

1. 순부유세의 개념

순부유세 시행국들이 갖는 공통적인 주요 특징들만을 모아 순부유세의 정의를 내려 보면 다음과 같다. 매년 정기적으로, 주로 개인이 보유한 동산·부동산 등 자산의 순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부내지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는 국세이다. 또 그 주된 과세목적과 기능은 ①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거나, ② 소득세를 세제 및 세정적 차원에서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순부유세를 다른 자산과세인 지방재산세, 상속세·증여세 등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순부유세의 개념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거의 모든 나라에서 소유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는 재산세(property tax)와 다른 점은 부과주체 및 세수 사용권이 주로 중앙정부에 있고, 세원인 재산을 개별적으로 포착한 물세(in rem)가 아니라 부부 또는 가구단위로 소유한 재산의 합산가액을 기초로 과세하는 인세(ad personam)이므로 인적기초 공제가 있고,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의 가액(ad valorem)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납세자의 다른 소득에서 납부되어 명목적 자산세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납부소득세액과의 합산에 의한 과세상한과 같은 소유재산의 원본잠식 배제 장치가 없다.

둘째, 상속세·유산세(inheritance, estate tax), 증여세(gift tax)와의 차이점은 인세이면서도 세대간 및 타인에 대한 자산 이전에 대해 포괄적 또는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보유단계에서 과세되며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재산에서 부담되는 실질적 자산세가 아닌 명목적 자산세이다.

셋째,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과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 체계 내에서 종합 또는 분리 과세되는데, 이는 자산소득 또는 자본이득이라는 유량(flow)에 대한 과세이지 부유세와 같이 자산이라는 저장(stock)에 대한 과세는 아니다.

2. 과세의 목적과 기능

부유세가 갖는 「소득세의 보완론적」 기능은 세제와 세정의 양 측면에서 파악

부유세는 소득세
누진세율 중
최고한계세율이 갖는
탈세유인과 근로 및
투자유욕 감퇴와 같은
경제적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1) 독일 헌법재판소는, 토지자산의 경우 1964년 이후 단 한차례도 재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1964년 평가액에 40%를 추가(mark-up)하여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면서 증권 등 금융자산은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순부유세(Vermögenssteuer)의 세부담균등화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1995년 6월 22일 내렸다. 특히 입법부가 1996년 말까지 과세표준실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입법을 하지 않으면 현행 세법규정이 자동적으로 실효한다고 결정을 하였다.

부유세는 그 자체만의
존립목적이 아니라
재산과 관련한 다른
세목의 과세행정을
정상화하거나 보조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할 수 있다. 첫째, 부유세는 소득세에 대한 부가세를 대치하거나 높은 소득세율을 인하하면서 동시에 도입된 사례가 많았던 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세 누진세율 중 최고한계세율이 갖는 탈세유인과 근로 및 투자이익 감퇴와 같은 경제적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부유세와 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과세상한규정이나, 소득세의 자본소득 합산규정을 준용하여 과세단위를 선택한다거나, 소득세 인적공제제도와 밀접하게 연계하여 인적 기초공제액을 결정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는 세제적으로 소득세를 보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 1〉~〈표 4〉 참조).

둘째, 자산소득이라는 유량(flow)에 대한 소득과세는 자산이라는 저장(stock)에 대한 수익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소득흐름을 추가적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자산과세보다 세무행정부담(administrative cost)과 조세순응비용(compliance cost)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세무행정상 기반이 취약하여 자산소득과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자산소득과세의 탈루가 많은 경우,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유세를 독립적으로 신설할 제도적 필요성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순부유세의 개념이 순부의 가치에 대해 부부 또는 세대를 과세단위로 소득발생 또는 수익여부에 관계없이 일정수준 이상을 대상으로 비례 또는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국세이므로, 중앙정부의 조세목적 중 하나인 「부의 집중배제」, 「부의 불균등 분배 완화」, 「수직적 공평의 실현」을 직접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조세라고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과세물건에 해당하는 자산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부담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실질적 자산세이다. 여타의 많은 조세가 「소득의 재분배효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의 재분배 문제를 달성하는 것과 달리, 보다 직접적으로 부(富)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경제개발 재원 조달이나 부유층의 사치적 소비억제 등을 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유세는 그 자체만의 존립목적이 아니라 재산과 관련한 다른 세목의 과세행정을 정상화하거나 보조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부를 구성하는 각종 재산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재산소득에 대한 타세목의 과세를 위하여 저장(stock)과 유량(flow)의 양면에서 세원관리와 과세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타세목의 세제 및 세무행정운영 개선에 도움이 된다. 특히 부유세가 신고납부주의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공적재산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나라에서도 과세공부(課稅公簿)와 신고내용간의 정기적인 상호대사(cross-checking)를 통해 과세정보의 효율

적인 수집과 활용에 도움이 된다.

순부유세는 아시아 및 중남에 몇몇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지만, 주로 유럽의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다.

Ⅲ. 외국의 순부유세제도

1. 주요국의 순부유세제도 현황

순부유세는 아시아권에서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이, 중남미에서는 콜롬비아, 우루과이가 시행중이고 일본도 시행한 경험이 있지만²⁾, 주로 유럽의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70여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갖고 있다³⁾.

1996년 현재 시행중인 10개 유럽국가 중 비교적 근래에 도입한 스페인(1978), (재)도입한 프랑스(1982, 1989), 도입을 고려했던 영국(1974~75), 향후 방향을 검토한 핀란드 등에서는 「부의 불균등분배 완화」가 순부유세 도입의 목적으로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 외의 국가들에서는 순부유세 도입 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당초의 목적과 현재의 유지 이유와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1900년대 초기의 도입 목적은 근대적인 소득세제가 정착되기 이전의 「소득세 보완적 기능」에 있다. 첫째, 20세기 초 부의 대부분을 구성하던 부동산은 가시적인 자산으로 과세당국의 세원포착이 용이한 반면, 이로부터 발생하는 부동산 소득은 세원 포착이 어려운 세무행정상의 애로를 감안한 소득세정의 보완기능이다. 둘째,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담세력 차이를 인정하여 동일한 종합소득하에서도 양 종류의 소득 간 수평적 공정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소득세제의 보완기능이라는 의미이다. 부유세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과세최저한이 상당히 낮거나, 비례세율이건 누진세율이건 세율이 낮아서 명목적 재산세⁴⁾로서의 소득소멸형 구조를 갖는 나라들은 특히 수평적 형평성을 고려한 소득세 보완적 기능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1〉~〈표 4〉는 1996년 현재 시행중이거나 시행했던 11개 유럽 국가들의 부유세제도를 부과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대상 자산 등의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각각의 표는 비록 상이한 기준이기는 하지만 유사한 과세형태를 갖는 국가들로 분류한 것이다(부유세제도의 유형).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는 모두 누진세율구조를 갖는 국가들로 이중 프랑스와 스페인은 비교적 근래에 부유세를 도입하면서 「부의 불균등분배

- 2)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도 1960년대를 전후하여 칼도(Nicholas Kaldor)의 세계개혁권고안을 받아들여 부유세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며, 일본은 슈프사절단(Shoup mission)의 권고로 3년간(1950~53)의 시행 경험이 있다.
- 3) 네덜란드는 1892년, 덴마크는 1904년, 스웨덴은 1910년, 노르웨이는 1911년, 독일은 1922년에 부유세를 도입하여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국가들이고, 룩셈부르크는 1944년, 아일랜드는 1975년, 스페인은 1978년, 프랑스는 1982년에 도입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 4) 재산에 대한 조세를 명목적 재산세와 실질적 재산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조세가 과징되지만 납세자는 자기의 소득에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고, 후자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가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재산에서 부담되어 원본이 잠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완화」를 목적으로 수직적 공평성을 추구하여 누진세율구조를 택한 국가들이 담세력 차이를 인정하여 동일한 종합소득하에서도 양 종류의 소득간 수평적 공평성 실현을 목표로 한다.

다. <표 2>의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부유세를 부과하는 국가⁵⁾로서 부유세의 세수비중이 높은 국가들이다(<표 5> 참조). <표 3>의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는 전반적인 조세체계가 유사한 북구국가들로 뚜렷한 공통점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표 4>의 오스트리아에서는 1994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고, <표 3>의 덴마크는 1997년부터 부유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11개 국가 중 프랑스는 유일하게 1982년 사회당의 집권으로 최초로 도입된 이래 사회당과 보수연합간의 정권교체에 따라 1987년의 폐지와 1988년의 부활을 거듭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좌파정치철학을 대변하는 세제이다⁶⁾.

법인에 대한 부유세는 폐지하는 추세가 일반적이어서 현재 독일, 룩셈부르크, 스위스만이 과세하고 있다. 법인에 대한 부유세 부과는 법인의 자본축적을 억제하여 생산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에서 법인에 대한 부유세 부과국이 줄어 들고 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법인의 순소득을 주주에게 배분·귀속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표 1〉 각국의 부유세제도(1996): 누진세율 국가

	프랑스 (Impôte solidanté Sur la Fortune - ISF)	스페인 (Impuesto sobre el Patrimonio - IP)	노르웨이 (Formuesskatt til staten)
창설연도	1982년, 1987년 폐지, 1989년 부활	1978년	1914년
부과주체	-중앙정부, 국세	-중앙정부, 국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납세 의무자 및 과세단위	-개인 : ○, 법인 : × -거주자: 전세계 순자산 소유자 -비거주자: 국내소재 자산 -부동산: 사업용자산 ¹⁾ 제외	-개인 : ○, 법인 : × -거주자: 순부 1,700만프랑스 프랑 초과, 총부 1만프랑스 프랑 초과 전세계 전자산 -비거주자: 국내소재자산 -세대별과세(부부, 자녀합산)	-개인 : ○, 법인 : ×(1992년 폐지) -거주자: 전세계 순자산 -비거주자: 국내자산 소유자 -부부 합산과세
대상자산 및 자산별 면세점	-동산 ·가재도구 ·보석, 자동차, 선박	-부동산 -동산: 가재도구, 보석, 자동차, 선박	-부동산: 해외부동산 제외 -동산: 가재도구 -금융 소액저축: 3만Nkr 생명보험: 5만Nkr

5) 이들 국가 외에 <표 4>의 스위스도 법인에게 부과하나 스위스는 지방정부는 개인에게 연방정부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독특한 국가이므로 기타 국가로 분류하였고, <표 1>의 노르웨이도 법인에게 부과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부과하므로 달리 분류하였다.
6) 아일랜드도 1975년부터 부유세를 채택하였으나 정부가 교체된 후인 1987년에 폐지하여 정권의 조세철학에 따라 세목의 채택·폐지를 겪은 국가이다.

	프랑스 (Impôte solidanté Sur la Fortune - ISF)	스페인 (Impuesto sobre el Patrimonio - IP)	노르웨이 (Formuesskatt til staten)
	-금융자산 소액저축, 연금, 생명보험 -기타: 거주주택, 영업권	-금융: 소액저축, 연금, 생명보험 -기타: 미술품 등, 거주주택, 특허권, 저작권, 영업권	-기타: 거주주택(시장가치의 20~30%)
과세표준 ³⁾ 및 기초공제	-기초공제: 세대당 461만 프랑	-기초공제: 거주자 1인당 1,700만ESP	-지방: 기초공제 • 거주자: 12만Nkr -중앙: 기초공제 • 비거주자, 독신거주자: 12만Nkr • 부양자있는 거주자: 15만Nkr
세율과 과세 상한	-누진세율구조 (단위: 프랑) 0~289만: 0.5% 289만~1,027만: 0.7% 1,027만~1,849만: 0.9% 1,849만~4,012만: 1.2% 4,012만 초과: 1.5% -가산세: 순부유세액의 10% (1995~) -과세상한 ²⁾ : 소득세 + 순부유세 > 전년 과세소득의 85%	-누진세율구조(단위: ESP) 0~2,678만: 0.2% 2,678만~5,356만: 0.3% 5,356만~10,712만: 0.5% 10,712만~21,424만: 0.9% 21,424만~42,848만: 1.3% 42,848만~85,696만: 1.7% 85,696만~171,392만: 2.1% 171,392만 초과: 2.5% -과세상한: 소득세 + 순부유세 > 과세소득의 70%	-지방정부: 1.1% 단일비례세율(0.4~1.1% 내에서 결정) -중앙정부: 3단계 누진세율 구조(단위: Nkr) • 비거주자, 독신거주자 0~115,000: 0.1% 115,000~295,000: 0.3% 295,000 초과: 0.5% • 부양자 없는 거주자 0~110,000: 0.1% 110,000~310,000: 0.3% 310,000 초과: 0.5% -과세상한(1993년 제정): 통상소득의 65%를 초과하는 중앙부유세 납세자는 지방부유세 경감
평가방법 및 주기	-1년 • 개인소유 동산·부동산: 시장가치 • 주식: 거래가격	-1년 • 개인소유 동산·부동산: 시장가격 • 주식: 거래가격	-매년 1월 1일 • 개인소유동산: 보장가치에 비례 • 부동산: 시장가격

프랑스와 스페인은 비교적 근래에 부유세를 도입하면서 「부의 불균등분배 완화」를 목적으로 수직적 공평성을 추구하여 누진세율구조를 택한 국가들이다.

프랑스는 1982년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최초로 도입된 이래 사회당과 보수연합간의 정권교체에 따라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였다.

	프랑스 (Impôte solidanté Sur la Fortune - ISF)	스페인 (Impuesto sobre el Patrimonio - IP)	노르웨이 (Formuesskatt til staten)
	연금: 실제수령액 농지: 시장가격 임야: 시장가격의 75%	• 농지 임야: Rural Tax 과표의 4% • 저작권 등: 시장가격	
비과세 감면 및 소득세 최고세율	-비과세: 주식이나 지분 - 56.8%	-비과세: 문화유산, 생활필수품, 개인연금, 영업활동에 쓰이지 않는 저자소유의 지적재산권 등, 영업에 사용되는 소유재산, 주식, 지분 - 56%	-비과세: • 해외부동산 • 비거주법인의 지분을 95%이상 소유한 거주자가 독신이거나 동거인 9인 이상인 경우 - 41.7%

- 주: 1) 프랑스에서 주식이나 지분은 사업용자산으로 분류되어 비과세됨.
 2) 이러한 순부유세 및 소득세 합계액의 과세상한(maximum tax burden)은 1996년 1월 1일부터 순재산 가액이 1,488만프랑을 넘는 고액자산가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서 합계세액과 과세최대한간의 차액에 대한 완전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①순부유세액의 50%와 ②제2과표계급(289만~1,027만프랑)의 상한인 1,027만프랑에 대한 순부유세액인 6만 6,110프랑 중 적은 금액에 한해 부분공제됨.
 3) 과세표준 = 총재산가액 - 채무 - 인적기초공제

자료: ICFD, *European Tax Handbook 1996*, 1996에서 재구성.

〈표 2〉 각국의 부유세제도(1996): 법인과세형¹⁾

	독일 (Vermögensteuer)	네덜란드 (Vermogensbelasting)	룩셈부르크 (Impôts la fortune - LIF)
창설연도	1922년	1982년	1913년
부과주체	-중앙정부, 주세(세수는 주 정부에)	-중앙정부, 국세	-중앙정부, 국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단위	-개인: ○, 법인: ○ -거주자: (이중과세 조약, 면세제외한 전세계 순자산 소유자 -비거주자: 독일 국내의 평가액 2만마르크 이상의 순자산 소유자 -세대별과세	-개인: ○, 법인: × -거주자: 전세계 순자산 소유자 -비거주자: 국내소재 특정자산 소유자 -부부합산과세(자녀 소유자산은 별도)	-개인: ○, 법인: ○ -거주자: 전세계 순자산 -비거주자: 국내 소재 특정자산 -세대별과세

	독일 (Vermögensteuer)	네덜란드 (Vermogensbelasting)	룩셈부르크 (Impôts la fortune-LIF)
과세표준 ¹⁾ 및 기초공제	-개인: 평가법에 의한 순자산-기초공제 -사업용 자산: 50만마르크를 기초공제 후 75%만 과세표준으로 계산 -기초공제: 1인당 12만마르크 -법인: 2만마르크 면세점	-개인: 공정시장가치에 의한 자산-부채 -공제: 연금, 상해·생명보험-사업주, 주주의 영업용 자산 20만 4천NLG까지 공제 -기초공제: 부양자녀 없는 27세 미만 독신 8만 2천 NLG, 기타 독신·별거·기혼자 13만NLG • 부부: 16만 3천NLG 부양자녀 1인당: 18세 미만 7천NLG, 단 취학중 18~27세 학생 4만 2천NLG 저소득계층(2만 3,450NLG이하 부부 합산 3만 3,500NLG 이하)에 대한 추가공제 허용	-전세계 자산-부채 -주식: 거주법인은 10% 비거주법인은 제외 -기초공제: 1인당 10만 LUF -저축예금 및 상장주식공제: 140만LUF, 부부의 경우 2배 공제액 허용 -기초공제: 부부자녀 2인 40만LUF
대상자산 및 자산별 면세점	-부동산: 농지, 임야, 토지, 영업용자산, 기타동산 권리 -동산·보석: 1만마르크 초과분 선박: 3만 5천마르크까지 과세 -금융자산: 연금 • 소액저축: 10만마르크 이상 • 생명보험: 1만마르크 이상 -기타자산 • 미술품 등: 2만마르크 초과분 • 거주용주택	-부동산 -동산: 보석: 6,500NLG 초과분, 자동차, 선박 -금융자산: 소액저축 -기타: • 거주주택: 시장가치의 60% • 저작권 특허권	-부동산 -동산: 보석: (5만LUF 초과분), 선박: (사치품인 경우) -금융자산: 소액저축 10만LUF 이상 -기타자산 미술품 등: 5만LUF 초과분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부유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부유세의 세수비중이 높은 국가들이다.

법인에 대한 부유세는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에서 폐지하는 추세이며, 현재는 독일, 스위스, 룩셈부르크만이 과세하고 있다.

	독일 (Vermögensteuer)	네덜란드 (Vermogensbelasting)	룩셈부르크 (Impôts la fortune-LIF)
세율과 과세상한	-개인: 1%(농림지 사업용 자산 주식: 0.5% 경감세율) -법인: 0.6%	-개인: 0.8% -과세상한: 소득세 + 부유세 > 소득의 68% 환급	-개인, 법인: 0.5% -법인과세하한: 2,500 LUF
평가방법 및 주기	-평가법 (Bewertungsgesetz, 1993)에 의함 • 농림재산, 토지: 6년 • 사업용 재산: 3년 • 주식: 시장가치 - 구 동독지역에 대한 비과세	- 1년 • 부동산: 시장가격의 60% • 주식, 임야, 저작권 등: 시장가격 • 농지: 임대가	- 3년 • 부동산: 임대가치 • 주식: 시장가치 • 생명보험: 초과이익의 2/3 또는 해약금 중 적은 것 • 농지 임야: 기대수익 가치
비과세 감면 및 소득세 최고세율	- 53%	- 60%	- 50%

주: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도 부유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에서 명명하였음. 단, 네덜란드는 1992년 법인에 대한 부유세 폐지.

1) 과세표준 = 총재산가액 - 채무 - 인적기초공제

자료: IBFD, European Tax Handbook 1996, 1996에서 재구성.

〈표 3〉 각국의 부유세제도(1996): 북유럽 국가

	스웨덴 (Statlig förmögenhetsskatt)	핀란드 (Varallisuusvero; förmögenhetsskatt)	덴마크 ¹⁾ (Formueskat til staten)
창설연도	1910년	1920년	1903년
부과주체	- 중앙정부, 국세	- 중앙정부, 국세	- 중앙정부, 국세
납세 의무자 및 과세 단위	- 개인: 0, 법인: X - 거주자: 80만SEK 초과하는 전세계 순자산 - 비거주자: 국내소재 자산 - 세대별과세(부부, 자녀합산)	- 개인: 0, 법인: X(법인소유 주식은 과세대상임), 기타 단체: - 거주자: 전세계 순자산 소유자 - 비거주자: 국내소재 자산 - 부부합산과세, 자녀합산과세	- 개인: 0, 법인: X - 거주자 - 비거주자
대상자산 및 자산별	- 부동산 - 동산: 보석, 자동차, 선박 - 금융: 연금	- 부동산 - 동산: 고가보석, 자동차, 선박	- 부동산 - 동산: 자동차, 선박 - 금융자산: 소액저축

	스웨덴 (Statlig förmögenhetsskatt)	핀란드 (Varallisuusvero; förmögenhetsskatt)	덴마크 ¹⁾ (Formueskat til staten)
면세점	-기타: 거주주택	-금융자산: 연금 -기타: 고가미술품, 거주주택	-기타: 주거주택, 특허권 저작권 등(저자소유는 면세)
과세표준 ²⁾ 및 기초공제	-매년 12월 31일의 순부 -기초공제 80만SEK	-기초공제 부부자녀 2인: 87만FIM 거주기혼자: 5만FIM 16세 이하 자녀 1인당 1만FIM -거주주택공제: 5만FIM	-기초공제: 240만DKK (기혼자의 경우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배우자에게 이전 가능)
세율과 과세상한	-1.5%	-0.9%: 과세최저한 500 FIM 있음 -과세상한: 소득세와 순부유세, 사회보장세 합계액이 통상과세소득의 70% 초과할 수 없음	-0.7%
평가방법 및 주기	-매년 12월 31일 •개인소유동산: 시장가격 •부동산: 시장가치의 75%(5년마다 평가) •주식: 거래가격 •연금: 실제 수령액	-1년 •개인소유통산: 시장가치 •부동산: 건물(구입가격) •주식: 거래가격 •연금: 실제 수령액	•매년 12월 31일 •개인소유통산: 시장가격 •부동산: 평가시점의 시장가격(4년마다 평가) •주식: 시장가격
비과세감면 및 소득세	- 56%(별도로 지방소득세 31%)	- 39%	- 44%(별도로 지방소득세 29~34%)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는 전반적으로 조세체계가 유사한 국가들이며, 덴마크의 경우 1997년에 부유세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주 : 1) 덴마크는 1997년부터 부유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음.

2)과세표준 = 총재산가액 - 채무 - 인적기초공제

자료 : IBFD, *European Tax Handbook* 1996, 1996에서 재구성.

스위스는 법인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오스트리아의 경우 1994년 1월에 부유세를 폐지하였다.

〈표 4〉 각국의 부유세제도(1996): 기타

	오스트리아 ¹⁾ (Vermögensteuer)	스위스 (Eidgenössische Wehrsteuer: Impôt pour ladéfense nationale)
창설연도	1923년	
부과주체	-중앙정부, 국세	-주정부+기초자치체 (지방세): 개인 -연방정부 (국세): 법인
납세 의무자 및 과세단위	-개인: ○, 법인: × -거주자: 전세계 순자산 -비거주자: 국내 소재자산 -세대별 과세	-개인: ○, 법인: ○ -거주자: 해외부동산 제외, 국내의 외국소유 영업소 제외 -비거주자: 국내 부동산, 영업소(주별로 차이 있음) -세대별 과세
대상자산 및 자산별 면세점	-부동산: -동산: 보석(15만SCH 초과분), 자동차, 선박 -금융: 소액저축 25만SCH까지 면세, 연금, 생명보험 -기타: 미술품등(30만SCH 초과분)	-부동산 -동산: 보석, 자동차, 선박 -금융: 소액저축, 연금, 생명보험 -기타: 미술품 등, 거주주택, 영업권
과세표준 ³⁾ 및 기초공제	-기초공제 •독신자: 15만ATS •부부: 30만ATS •부양자녀 1인당 15만ATS -법인세 면세점: 주식회사 100만ATS, 유한회사 10만ATS, 기타 15만ATS	-기초공제 ²⁾ •기혼자(이혼자, 자녀있는 독신자 포함): 12만 6천CHF •독신자: 6만 3천CHF
세율과 과세상한	-1%	-법인: 0.0825%(승수) 예) Zurich: 0.15(기본세율) : 실효세율=기본세율×승수 -개인 ²⁾ : 0.15~0.27%(Aargau주의 경우)
평가방법 및 주기	-3년 •개인소유부동산: 시장가격 •비업무용부동산: 평균건설비 기준(9년 마다 평가) •주식: 재무성	-2년 •부동산: 시장가격 •주식: 거래가격 •연금: 보상액

	오스트리아 ¹⁾ (Vermögensteuer)	스위스 (Eidgenössische Wehrsteuer; Impôt pour la défense nationale)
	보험: 가산금 또는 상환액의 2/3 농지 임야: 표준산출액(9년마다 평가) 특허권 저작권: 3년간 평균지불액	
비과세 감면 및 소득세 최고세율	- 50%	

순부유세가
총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시행국가별로 다른데
일반적으로
세수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운용되는
조세는 아니다.

주 : 1) 1994년부터 부유세 폐지.
2) 주(canton)별로 차이가 있음.
3) 과세표준 = 총재산가액 - 채무 - 인적기초공제

자료 : IBFD, *European Tax Handbook* 1996, 1996.

2. 각국의 시행경험과 경제적 효과

여타 조세와 마찬가지로, 부유세도 ① 세수확보의 충분성 ② 세제의 단순성 및 세무행정의 편의성 ③ 형평성의 제고 ④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시행경험을 판단할 수 있다. 이 중 자원의 효율적 사용은 시행국가에서 실시 동기로 간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첫 3가지 측면에서 각국의 시행 경험을 가늠해 보기로 한다.

순부유세의 징수액은 순부유세 부과대상범위에 따라 총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행국가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세수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운용되는 조세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표 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총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부유세의 비중은 법인에게도 부유세를 부과하는 국가군과 개인에게만 부유세를 부과하는 국가군간에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납세의무자로 법인까지를 포함하는 룩셈부르크(4.9%)·스위스(3.7%)·노르웨이(1.25%)·오스트리아(1.12%)·독일(1.01%)은 부유세의 총조세대비 세수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개인만을 부유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그 외의 국가는 0.1~0.6% 범위의 낮은 세수비중을 갖고 있다. 그러나 순부유세제의 유지·운영이 재산관련 타세목의 세수증대에 미치는 효과까지도 감안한다면 부유세만의 총조세수입 비율만으로 순부유세제도의 세수기능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유세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세무행정의 편의성 측면에서 그다지 매력적인 조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부유세는 신고납부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

부유세의 경제적 효과는, 저축·투자, 소비유형 및 자산수요 왜곡, 그리고 분배에 미치는 효과라는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으므로 납세자의 과소신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과세당국이 적정한 세무조사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 모든 나라들이 부유세 세무행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자산의 다양성과 이에 따른 포착률 (disclosure rate) 상이성, 그리고 공개거래시장의 존재정도에 따른 과표율 (assessment ratio)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보석, 서화·골동품, 가재도구는 공개거래시장에서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수집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보유사실 여부도 납세자의 신고에 의존해야 하며, 비상장·장의 주식 등은 추계적 과세평가방법에 의해서도 대부분 저평가되고 있다.

경상적인 소득이 아닌 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되는 부유세의 도입으로, 부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며 자산소득이 노동소득 보다 증가된다는 이론적 측면의 형평성 제고는 실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일정액의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부유세 세율은 소득세 세율보다 훨씬 낮게 마련이고, 이미 부유세를 부과해 온 국가들의 부유세 부담이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제고라는 분배효과는 부유세의 구체적인 시행형태에 의존할 것이다.

부유세의 경제적 효과는 ① 저축 및 투자 ② 소비유형 및 자산수요 왜곡 ③ 분배에 미치는 효과라는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저축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저축의 결과 축적된 자본에 대한 과세이므로 소비지출을 늘려 저축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부유세가 비수익재산에까지 과세되므로 저축감소 효과의 크기는 소득세보다 클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자본형성에 부(負)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내구소비재(예, 자동차 및 보트)도 포함되므로 소비지출 중에서도 내구재와 비내구재간의 지출구성비율을 변화시킨다. 자산수익은 일반적으로 ① 보유기간중의 자산소득흐름(capital income flow)과 ② 매각시의 자산가치상승 또는 자본이득(capital appreciation)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소득세와 부유세에 대한 세부담의 합을 줄이기 위해 양자 중 자본이득구성 부분이 많은 위험자산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부유세는 대체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거나 자본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소비자나 요소공급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갖는다.

〈표 5〉 순부유세의 세수비중

(단위 : 백만 자국통화단위³⁾, %)

		1980	1985	1989	1990	1991	1992	1993
핀란드	세액 ¹⁾	145	279	151	155	116	151	231
	비율 ²⁾	0.21	0.21	0.07	0.07	0.05	0.07	0.11
프랑스 ⁴⁾	세액	-	13,258	16,291	17,155	17,036	19,923	18,755
	비율	0.00	0.63	0.61	0.60	0.57	0.65	0.60
스페인	세액	17.78	23.63	25.81	105.95	76.81	85.27	94.71
	비율	0.49	0.29	0.17	0.61	0.40	0.40	0.44
스웨덴	세액	717	1,871	3,873	3,200	2,509	2,173	2,509
	비율	0.28	0.43	0.57	0.42	0.33	0.30	0.35
네덜란드	세액	1,140	940	1,120	1,220	1,450	1,390	1,580
	비율	0.74	0.50	0.51	0.53	0.57	0.52	0.57
룩셈부르크	세액	1,711	3,281	5,916	7,014	6,636	6,988	9,443
	비율	2.80	3.10	4.30	4.67	4.21	4.11	4.90
스위스	세액	2,201	2,733	3,500	3,736	3,788	4,060	4,215
	비율	4.20	3.75	3.80	3.78	3.67	3.76	3.70
노르웨이	세액	1,450	2,623	4,484	5,118	5,413	5,296	4,206
	비율	1.08	1.10	1.57	1.67	1.67	1.62	1.25
독일	세액	8,532	7,672	9,813	12,152	12,924	12,805	12,490
	비율	1.52	1.10	1.15	1.37	1.19	1.07	1.01
오스트리아 ⁵⁾	세액	5,517	5,744	7,842	8,836	9,999	10,535	10,323
	비율	1.35	0.99	1.14	1.19	1.24	1.19	1.12
덴마크 ⁵⁾	세액	944	1,395	1,242	934	763	797	840
	비율	0.56	0.46	0.32	0.24	0.19	0.19	0.19
아일랜드 ⁶⁾	세액	0.8	0.17	-	-	-	-	-
	비율	-	-	-	-	-	-	-

납세자들은 소득세와 부유세에 대한 세부담의 합을 줄이기 위해 양자 중 자본이득구성 부분이 많은 위험자산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주 : 1) 순부유세액임.

2) 총조세액에 대한 순부유세의 비율임.

3) 각국의 통화단위로 ATS는 오스트리아 실링(schillings), DKK는 덴마크 크로너(Kroners), SEK는 스웨덴 크로나(kronas), NOK는 노르웨이 크로네(krones), FIM은 핀란드 마르카(markkas), FF는 프랑스 프랑(francs), DM은 독일 마르크(marks), NLG는 네덜란드 길더(guilders), ESP는 스페인 페스타(pesetas), 아일랜드 파운드(pounds)임.

4) 프랑스는 1982년에 도입하여 1987년 일시 폐지하였다가 1988년 재차도입하여 시행중임.

5) 오스트리아는 1994년 1월 1일부터 폐지하였고, 덴마크는 1997년부터 폐지기로 결정함.

6) 아일랜드는 3년(1975~78년)간만 시행하였으므로, 징수액은 과년도 분이고 1975년 비율은 0.3%임.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of OECD Countries 1965~1994, 1995.

우리나라가 IV. 결론 및 정책시사점

순부유세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면 현재 토지에 국한하여 유사하게 시행중인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문제와 공시지가 개선문제, 전산과세자료의 재정비 등의 제반여건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결국 부유세제도는 부에 대한 수익활동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자산소득으로 포착되지 않는 부유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소득을 통해서만 세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소득과세적 접근방법 대신, 거시적 부 자체에 대해 담세력을 인정하여 독립적인 자산세를 운영하여 부의 불균등 완화를 지향하는 제도이다. 누진적 개인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 계층의 과세소득 중 최고 세율구간소득(top slice)은 대부분 근로소득보다는 영속성이 강한 자산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누진도의 강화로 소득 재분배의 실효성보다는 조세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명목적인 법정세율을 높이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의 인하와 함께 부유세를 도입하는 조세정책이 유럽을 중심으로 시행중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순부유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만일 도입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먼저 현재 토지에 국한해 유사하게 시행중인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문제와 공시지가 개선문제, 전산과세자료의 재정비 등의 제반여건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선행조건이 충족되고 나면 개편된 종합토지세를 모체(prototype)로 하여 타세목을 포함한 조세체계를 조정하는 형식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시행용이성(implementability)을 높이는 방안이라 판단된다.

첫째, 우리나라 개별 가구의 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만에 대한 인별합산 누진보유과세인 종합토지세는 부유세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자산과세이므로, 이를 신종토세(新綜土稅)와 지방토지세로 이분화한다. 단일비례세율구조를 갖고 지방재정확충을 주기능으로 하는 지방토지세는 개별 물세로서 발전시켜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을 강조하고, 이를 제외한 부분을 중앙정부의 토지정책수단으로서의 신종토세로 재구성하여 개편하며, 과세평가업무는 중앙정부책임하에, 양 세목이 일괄적 기준하에서 시행하고 세수는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활용한다.

둘째, 신종토세는 토지·건물을 포함하여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일반자산세로 발전시킨 후, 과세대상자산간 포착도(disclosure degree)와 평가율(assessment ratio)의 균일화작업을 추진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동산을 포함하고 부채를 차감하며 과세단위를 세대로 확대하는 순부유세로 발전시켜 나가는 최종 단계로 진행한다.

이와 같은 단계적 접근방법은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과다보유 계층에 대한

임대소득과세 및 양도차익과 같은 자산소득과세가 세정상의 여건 미비로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해 토지문제 해결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종합토지세 개편방향과 맞물려 중앙정부의 여러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KDI**

외국의 탄소세 도입 현황

최준욱/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탄소세는 화석연료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며, 세율은 특정 화석연료의 탄소함유량에 따라 결정된다.

I. 탄소세의 개념과 목적

탄소세는 화석연료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며, 세율은 특정 화석연료의 탄소함유량에 따라 결정된다. 탄소세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이며 그 상당 부분이 화석연료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다. 현재의 기술로는 일단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자연의 정화작용 이상으로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억제해야 한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특정 화석연료가 함유하고 있는 탄소의 양과 비례하기 때문에 화석연료의 탄소함유량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는 데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상당한 기간 전부터 주장

되어 온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국제적 노력은 아직도 성공적이지 못하다. 이는 현대문명이 이미 화석연료의 사용 위주로 되어 있어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이산화탄소의 배출 저감이 성공적이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인한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지만, 지구상의 권력은 각 국가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각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이 지구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한 수준보다 부족하리라는 것은 공공경제학의 기초이론으로부터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특정 국가가 독자적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는 자국의 산업경쟁력의 약화라는 부담까지도 감수해야 하며 그로 인한 비용은 그 국가가 얻게 되는 이익보다도 클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탄소세를 도입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

그러나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및 네덜란드는 1990년대 초반에 이미 단독으로 탄소세를 도입했으며, 이는 위 주장이 예측하는 바와는 다르다. 이들 나라에서의 탄소세 도입의 경험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위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탄소세 도입의 실현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이들 나라에서의 탄소세 도입의 배경과 진행과정을 간단히 요약하고 그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한다.

특정 국가가 독자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산업경쟁력의 약화라는 부담까지도 감수해야 하며 그로 인한 비용은 그 국가가 얻게 되는 이익보다도 클 수 있다.

II. EC의 에너지·탄소세 도입안¹⁾

탄소세의 도입에 대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나 그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정책안으로 표면화된 것은 EC 위원회가 제안한 에너지·탄소세 도입안이다. 이 안은 탄소세와 에너지세를 일정 비율로 결합한 형태의 과세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세란 특정 자원의 발열량에 따라 부과되는 간접세이며, 에너지 자원의 절약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에너지세와 탄소세가 일정 비율로 결합된 EC안은 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한 기본안은 1991년 9월에 채택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EC 전략」 중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 문서는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온난화 문제의 주원

1) 제Ⅱ장과 제Ⅲ장의 내용은 한국 전력공사에서 발행한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세제 현황과 환경경제 도입 동향』(1994)에서 발췌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에너지세와 탄소세가 일정비율로 결합된 EC안은 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이라는 점과 온실가스 효과의 잠재적인 위험성이 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1992년 5월 EC 위원회가 에너지·탄소세의 도입에 관한 각료 이사회 지침안을 정리하여 EC 각료회의에 제안하였으며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공업원료 이외의 모든 1차 에너지이며 석유 연료 및 10MW 이상의 수력 발전을 포함한다. 세율은 에너지 함유량에 비례한 에너지세 부분과 탄소 함유량에 비례한 탄소세 부분이 일정 비율로 되어 있다. 가맹국은 세수중립의 원칙에 따라서 에너지·탄소세에 의한 세수의 증가분을 다른 세금 수준을 인하여 조정한다. 에너지·탄소세는 원칙적으로 EC 가맹국의 기존 간접세제도에 추가하여 그것들과 동시에 병행하여 적용하며, 세금의 징수와 관리는 각 국가별로 한다. EC 단독으로 도입하면 역내의 산업이 역외의 산업에 대해 불리해지므로 미국과 일본 등 기타 OECD 국가들이 동일한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EC가 먼저 도입하는 경우에도 미국과 일본이 가입할 때까지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한해서 경감 또는 면세 한다.

이 안의 시행에 대해서는 EC 가맹국 간에도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덴마크, 네덜란드는 이미 독자적으로 탄소세 도입을 추진중이었으며, 독일, 이탈리아는 이 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프랑스는 미국과 일본이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전제 하였고, 영국은 약간 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반면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 안의 시행이 자국의 산업 발전에 대한 저해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역외에서도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나, 미국과 일본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이 안은 결국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III. 국가별 탄소세 도입의 배경과 진행과정

EC의 에너지·탄소세 도입안과는 관계없이 몇몇 나라들은 1990년대 초반에 단독으로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단독으로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의 북구 4개국과 네덜란드 등 총 5개 국가이다. 이들 국가에서의 탄소세 도입의 배경과 진행과정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의 탄소세 도입에 대해서 국가별로 간단히 살펴보기

로 하자.

1. 핀란드

핀란드는 1990년 1월에 탄소세를 도입하여, 세계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가 되었다. 핀란드의 탄소세 도입은 이산화탄소 저감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세계개혁에 따른 소득세 감세에 의한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하였다. 사실 핀란드는 탄소세 도입 당시에만 해도 이산화탄소 저감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

핀란드의 탄소세 도입은 이와 더불어 다른 에너지세를 경감하지 않았다는 점과 면세·감세 조치가 공업제품의 원료가 되는 화석연료, 정유사 관계 소비 연료, 항공·선박용 중유 등에 대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일반 연소용으로 소비되는 유류, 천연가스, 석탄에 대해서는 각 연료의 탄소 함유량에 따른 과세를 하고 있어 탄소세의 기본 취지에 비교적 부합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송용 연료에 대한 환경손실세는 도입 당시에는 소비세 부분과 탄소세 부분을 구별하지 않고 있었으며, 1993년에 이르러 탄소세 부분이 별도 과세되고는 있지만 요율이 전반적으로 너무 높고 탄소함유량에 비례하여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면까지 고려한다면, 핀란드의 탄소세는 탄소세의 기본 취지에 부분적으로만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탄소세의 세율이 전반적으로 너무 낮아 이산화탄소 배출의 저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책의 실효성은 매우 미약하다. 핀란드의 산업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향후에도 독자적인 탄소세의 강화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핀란드는 탄소세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그 요율이 매우 낮아, 실질적으로는 수송용연료에 대한 과세강화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2. 스웨덴

스웨덴은 1991년에 탄소세 및 유황세를 도입하고, 1992년에는 질소산화물 부과금을 도입했다. 이러한 스웨덴의 일련의 환경세 도입은 이전부터 추진해 온 세계개혁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소득세의 감세와 더불어 세수증립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스웨덴의 탄소세 세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며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도 강한 목표를 두고 있다.

핀란드의 탄소세 도입은 세계 최초인데 이산화탄소 저감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세계개혁에 따른 소득세 감세에 의한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하였다.

스웨덴이 본래의 탄소세안을 후퇴시킨 것은 한 나라가 단독으로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산업경쟁력의 약화라는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스웨덴의 탄소세는 광범위한 화석연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중유나 석탄 등에도 탄소세가 부과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탄소세의 기본취지에 비교적 잘 부합한다.

그러나 1993년의 세제개편에서는 소비 부분에 대한 탄소세 요율은 더욱 인상하였지만, 산업 부분에 대한 세율은 소비 부분의 4분의 1로 대폭 인하하는 한편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공제를 허용하였다. 그 이유는 EC의 탄소세 도입이 늦어짐에 따라 스웨덴만이 과세함으로써 생기는 산업경쟁력의 약화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스웨덴의 탄소세는 도입 초기에는 비교적 탄소세의 기본 취지를 잘 살렸으나, 1993년의 세제개편을 통해서 산업에 대한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수송용 연료가 가장 많은 탄소세를 부담하는 형태로 변해 버렸다. 스웨덴이 본래의 탄소세안을 후퇴시킨 것은 한 나라가 단독으로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산업경쟁력의 약화라는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3. 노르웨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 이미 1970년에 유황세를 도입한 바 있는 노르웨이는 1991년에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노르웨이의 탄소세 도입은 소득세를 감세하고 간접세의 강화를 피하는 세제개편에 맞추어 추진되었으나, 연료에 대한 간접세의 강화를 통한 에너지 자원의 절약이라는 목표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노르웨이의 탄소세는 세율이 탄소함유량에 비례하지 않으므로 엄밀한 의미의 탄소세의 원칙에 잘 부합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휘발유에 대한 탄소세는 경유에 비해 2배에 달한다. 또한 석탄은 애초에 면세되었고, 1992년 과세 대상이 되었으나 실제 석탄 사용 중 95%가 면세되고 있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탄소세는 다양한 환급·면세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화력발전소의 석유류 소비에 대한 소비세는 전력 소비세와의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환급하고 있으며,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면세·감세 혜택을 받고 있는 산업 분야들도 다수 있다.

탄소세 도입을 통해서 사실상 경유, 휘발유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어 수송용 연료가 가장 큰 추가 부담을 지게 되었다. 결국 노르웨이의 탄소세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탄소세라기보다는 다양한 국가적 상황을 반영한 에너지세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덴마크

덴마크는 1992년 에너지 소비 감소와 이산화탄소 저감을 목표로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도입의 시작은 1990년 4월 발표한 「에너지 2000」이라는 보고서가 계기가 되었으며, 의회에서 이 보고서를 받아들여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연합이 추진하였다. 원래의 목적이 세수증대는 아니었으나, 탄소세 수입의 일부는 관세 인하로 인한 수입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쓰였다.

탄소세의 과세 대상은 가솔린과 천연가스를 제외한 모든 화석연료와 전력이다. 가솔린은 탄소세 도입 이전에 이미 중과세되고 있어서 기존의 과세체계를 유지하였고, 천연가스는 다른 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면세하는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에너지세제의 기본적인 성격은 산업용에는 낮게 과세하고 민생용에는 높게 과세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특히 산업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탄소세 도입 이후에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산업에 대한 경감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민생용 유류의 경우 탄소세 도입과 동시에 에너지세를 인하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덴마크의 탄소세는 탄소세 도입의 기본 취지에 잘 부합되지는 않는다. 결국 덴마크의 탄소세는 애초에는 이산화탄소의 저감을 위한 목표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국내적인 여건을 고려한 환경세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천연가스와 가솔린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나, 감면 대상이 광범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산화탄소 배출의 저감에 큰 효과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1990년 2월에 탄소세를 도입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일반 연료세를 1.5배로 인상하였다. 이에 대한 움직임은 1989년 국가환경정책계획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국가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에 따른 재정지출의 증가분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세수의 증가분은 전부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었다.

1991년에는 연료세의 일반환경세와 탄소세 부분을 동시에 인상하였으며,

덴마크의 탄소세는 애초에는 이산화탄소의 저감을 위한 목표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국내적인 여건을 고려한 환경세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은 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순수하게 이산화탄소 저감만을 목표로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는 사실상 덴마크뿐이다.

1992년의 개정을 통해서 기존 과세방법에 대한 전면적 개정을 실시하여, 탄소 함유량과 발열량에 따라 각각 50%씩 과세하는 EC안을 채택하였다. 이 개정으로 탄소세 부분이 대폭 강화되었고, 에너지세와 환경세는 일반예산으로 편성되게 되었다. 최초로 면세대상은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1992년의 요율 인상 이후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해 부분적으로 면세대상을 확대하였다.

네덜란드의 환경세 도입은 소비억제와 더불어 환경투자재원의 조달이 목표였다. 따라서 탄소세의 도입이 소득세의 인하와 더불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세부담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면에서는 EC의 에너지·환경세안의 세수 중립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탄소세의 기본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Ⅶ. 결론

탄소세를 이미 도입한 국가들에서 도입의 동기와 진행과정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들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은 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순수하게 이산화탄소 저감만을 목표로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는 사실상 덴마크뿐이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저감을 위한 탄소세 도입이 다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계개편의 방향과 일치하였거나, 오히려 다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소득세 감세에 따른 세수보전의 필요성이 탄소세 도입의 이면에 강하게 작용하였고, 네덜란드의 경우는 탄소세 도입을 통한 세수 증대의 목적이 강하였다.

이들 국가 중 탄소세 도입으로 인해 전반적인 연료가격의 인상이 가장 두드러진 나라는 네덜란드이며, 가격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나라는 덴마크이다. 이를 각국의 탄소세 도입의 동기와 비교하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순수하게 이산화탄소 저감을 목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한 덴마크의 경우에는 오히려 탄소세의 도입이 가장 약하게 진행되었으며, 세수 증대를 위해 도입된 네덜란드의 탄소세는 탄소세의 기본취지를 잘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각 국가가 단독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경우, 그 성공여부는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의 저감이라는 목표보다는 다른 정책 목표의 필요성에 의해 좌우될 수 있

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단독으로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들이 탄소세 도입과정에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자국의 산업경쟁력 약화였다. 이 때문에 각 국가는 실질적으로는 산업용 연료에는 비교적 감세조치를 취하고, 민생용이나 수송용 연료에 중과세하는 형태를 취한 경향이 있다. 노르웨이, 핀란드의 경우는 물론이고, 비교적 초기에는 탄소세의 기본취지를 잘 살리고 있던 스웨덴의 경우에도 1993년의 세제개편을 통해서 산업용 연료에 대한 탄소세율은 대폭 낮추었다.

이러한 외국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개방화된 경제에 있어서 한 나라가 단독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은 산업경쟁력의 약화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탄소세의 부과로 인한 이익은 전 세계가 누리 는 것이기 때문에 한 국가가 자국의 산업을 희생하면서까지 단독으로 탄소세를 도입할 동기는 약하다. 이미 독자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들이 비교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은 나라라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탄소세의 도입이 그 국가의 다른 정책적인 필요성과 부합되기 때문에 실현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저감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저감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코노미스트¹⁾ - 그들은 별종인가?

홍법교/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 the average human being is about 95 percent selfish in the narrow sense of the term."

-Gordon Tullock(1976)²⁾

[. 서론

경제학은 인간의 행태가 효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합리적이며 이기적인 (rational and self-interested) 바탕에 근거하고 있다는 명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학의 기본적인 가르침 때문에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행태는 과연 다른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과 다른가 하는 문제가 경제학자 및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즉, 이코노미스트들은 다른 직종의 사람들보다 이기적인 행동양식을 보이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경제학을 공부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경제학을 배움으로 해서 그러한 성향을 띄게 되는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 보고자 한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코노미스트의 행태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독특한 면이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경제학의 기본적인 명제 때문인데, 이기적 효용 극대화를 위한 경제학적 사고 방식이 일상보편적인 사고 방식

과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로서 ultimatum 게임을 들 수 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설정하고 각자 실제로 게임에 임해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하여 접근하는 계기를 삼아 보기로 하자.

- 두 사람(분배자와 결정자)이 상금 10,000원을 나눠 갖기로 한다.
- 분배자는 상금 10,000원을 최소 10원 단위로 둘로 나눠 자기 몫과 결정자의 몫을 정한다.
- 결정자는 분배자의 배분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한다. 만일 결정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모두 한푼의 상금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게임 상황에서

- 당신이 분배자라면 자기 몫을 얼마로 할 것인가?
- 당신이 결정자라면 최소 얼마의 상금이라면 분배자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 상금의 액수가 달라진다면?
- 이코노미스트라면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Guth et al.(1982)³⁾과 Kahneman et al.(1986)⁴⁾은 이 실험에서 50 대 50의 분배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한쪽으로 치우친 분배는 공정성을 이유로 대부분 기각됨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경제학적인 사고에 입각한다면, 결정자가 최소한 10원을 받는 것이 아무것도 못받는 것보다는 효용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일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코노미스트들은 과연 이기적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최근 미국의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JEP)는 이러한 명제에 대한 흥미있는 연구 논문들을 몇 차례에 걸쳐 게재한 바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JEP에 게재된 다음의 네 가지 논문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이러한 관심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1. J. Carter and M. Irons, "Are Economists Different, and If So, Why?," Spring 1991, pp.171~177.
2. R. Frank, T. Gilovich and D. Regan, "Does Studying Economics Inhibit Cooperation?," Spring 1993, pp.159~171.(이하에서는 FGR로 표기)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행태는 과연 다른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다른가 하는 문제가 경제학자 및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어들였다.

1) Economists는 흔히 우리말로 경제학자로 번역되나, 여기서는 학자뿐 아니라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 등을 포함하는 광의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로 쓰기로 한다.

2) G. Tullock, *The Vote Motive*, London:Institute for Economic Affairs, 1976.

3) W. Guth, R. Schmittberger and B. Schwarze, "An Experimental Analysis of Ultimatum Bargaining,"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December 1982, pp.367~388.

4) D. Kahneman, J. Knetsch, and R. Thaler, "Fairness and the Assumptions of Economics," *Journal of Business*, Part 2, October 1986, S285~S300.

이코노미스트들이 합리적·이기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원래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학을 선택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경제학을 배우면서 변했기 때문인가?

3. A. Yezer, R. Goldfarb and P. Poppen, "Does Studying Economics Discourage Cooperation? Watch What We Do, Not What We Say or How We Play," Winter 1996, pp.177~186. (이하에서는 YGP로 표기)
 4. R. Frank, T. Gilovich and D. Regan, "Do Economists Make Bad Citizens?," Winter 1996, pp.187~192.

II. 이기주의적 성향

먼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합리적·이기적인 성향을 나타내는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한 실증적 결과를 살펴보고, 또 그러한 성향이 있다면 원래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경제학을 선택하였기 때문인가(선택가설), 아니면 경제학을 배우면서 이렇게 변하였는가(학습가설)를 알아보기로 하자.

1. Carter와 Irons(1991)의 Ultimatum 게임 실험

Carter와 Irons(1991)는 College of Holy Cross에서 92명의 학생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ultimatum 게임(상금 10달러, 최소 단위 0.5달러)을 실시하였다.

그룹 1) 비경제학 전공 1학년생

그룹 2) 경제학 전공 1학년생으로 첫학기 거시 수강

그룹 3) 경제학 과목을 듣지 않은 비경제학 전공 4학년생

그룹 4) 경제학 전공 4학년생

〈표 1〉 분배자와 결정자가 정한 몫의 평균

A. 결정자의 최소 요구액 평균

	1학년	4학년	전체
이코노미스트	1.38 (1.54)	1.98 (1.82)	1.70 (1.70)
비이코노미스트	2.85 (1.57)	1.98 (1.70)	2.44 (1.67)
전체	2.21 (1.70)	1.98 (1.74)	2.09 (1.72)

B. 분배자의 자기 몫 평균

	1학년	4학년	전체
이코노미스트	6.30 (1.41)	6.02 (1.36)	6.15 (1.37)
비이코노미스트	5.65 (1.07)	5.20 (0.49)	5.44 (0.87)
전체	5.93 (1.25)	5.61 (1.10)	5.77 (1.18)

Carter와 Irons의 ultimatum게임 실험결과 경제학은 선택효과는 있고 학습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임.
자료: Carter와 Irons(1991), p.173.

그 결과가 <표 1>에 나타나 있는데, 경제학 전공자는 결정자로서 최소 1.70달러를 받기를 원하고(최소 요구액) 분배자로서 평균 6.15달러를 갖기를 원하는 데(최소 분배액) 반하여 비경제학 전공자는 결정자로서 최소 2.44달러를 받기를 원하고 분배자로서 5.44달러를 갖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학 전공자의 경우가 비전공자에 비하여 최소 요구액은 작고, 최소 분배액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가 <표 2>에 수록되어 있다. <표 2>에서 첫번째 더미는 경제학 전공 더미, 둘째 더미는 4학년 더미, 셋째 더미는 4학년 경제학 전공 더미로서 각각 첫째 더미는 신입생 경제학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구분하고(선택효과), 둘째 더미는 4학년 비전공자와 신입생 비전공자를 구분하며(maturation effect), 셋째 더미는 4학년 전공자와 신입생 전공자를 구분한다(학습효과)⁵⁾.

최소 요구액과 최소 분배액을 각각 상수와 경제학 전공을 구별하는 더미변수에 회귀분석시킨 결과 두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1열과 4열). 즉 신입생과 4학년을 합하여 경제학 전공학생은 비전공학생에 비하여 최소 요구액은 보다 작으며, 최소 분배액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선택가설이 옳다면 신입생 전공자는 신입생 비전공자에 비하여 최소 요구액은 작고, 최소 분배액은 커야 하는데, <표 2>의 2열과 5열의 첫째 더미 계수는 이러한 선택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학습효과에 대해서는 만일 학습효과가 있다면 신입생 시절의 차이가 4학년이 되면 더 커져야 한다. 그런데 최소 요구액의 경우, 셋째 더미의 계수가 양이므로 학습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또 최소 분배액의 경우, 셋째 더미의 계수가 양이기는 하나 유의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5) 넷째 더미 정해(正解)는 경제학 전공 학생들이 연역적 사고에 보다 뛰어난가를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에 대하여 옳은 답을 제시한 경우는 1, 틀린 경우는 0의 값을 갖는다.

Marwell과 Ames의 무임승차 실험으로 비경제학 그룹이 경제학 그룹보다 투자결정시 공정성을 많이 고려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선택효과는 있고, 학습효과는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2〉 최소 요구액 및 분배액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정

	최소 요구액			최소 분배액		
	(1)	(2)	(3)	(4)	(5)	(6)
상수	2.44 (10.12)	2.85 (8.74)	3.10 (9.04)	5.44 (33.59)	5.65 (25.53)	5.52 (24.76)
경제학전공	-0.74 (-2.10)	-1.47 (-2.98)	-1.39 (2.87)	0.71 (3.01)	0.65 (1.92)	0.55 (1.66)
4학년		-0.87 (-1.83)	-0.61 (-1.26)		-0.46 (-1.42)	-0.53 (-1.66)
경제학전공 & 4학년		1.47 (2.11)	1.39 (2.04)		0.18 (0.38)	0.20 (0.44)
정해(正解)			-0.74 (-2.07)			0.58 (2.39)
R-Square	0.05	0.10	0.14	0.09	0.12	0.17
N	92	92	92	92	92	92

주: () 안은 t 통계량임.
 자료: Carter와 Irons(1991), p.174.

2. Marwell과 Ames(1981)⁶⁾의 무임승차(Free Rider) 실험

Marwell과 Ames는 실험을 통하여 이코노미스트들의 무임승차 성향을 살펴보았다. 이 실험에서 경제학 그룹과 비경제학 그룹의 두 그룹은 처음에 일정한 액수의 돈(endowment)을 받는다. 이 돈을 공공계좌와 개인계좌의 두 계좌에 나누어 입금시키도록 하는데 개인계좌에 입금한 돈은 일정한 실험기간 후에 그대로(dollar-for-dollar) 반환되며, 공공계좌에 입금한 돈은 모두 합하여 일정기간 후에 1보다 큰 배수를 곱한 다음 모든 참가자에게 똑같이 배분하기로 한다. 이 경우 사회적 최적 행동은 모든 돈을 공공계좌에 입금시키는 것이고, 개인적인 최적행동은 개인계좌에 입금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실험결과 경제학 전공학생은 평균적으로 자기 돈의 약 20%를, 비전공학생은 49%를 공공계좌에 입금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arwell과 Ames는 그

6) G. Marwell and R. Ames, "Economists Free Ride, Does Anyone Els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June 1981, pp. 295~310.

차이점의 이유를 알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충질문을 행하였다.

- 1) 공공계좌에 대한 공정한(fair) 투자는 얼마인가?
- 2) 당신은 투자결정을 내림에 있어 '공정성'을 염두에 두는가?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비전공학생의 75%가 '반이상', 25%가 '전부' 라고 대답하였고,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비전공학생 거의 전부가 '예' 라고 대답하였다. 경제학 전공학생의 경우는 3분의 1 이상이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무응답 또는 난해한 답을 하였으며, 응답자 가운데 대부분이 조금 또는 전혀 기여를 안해도 공정하다고 대답하였다. 비전공학생에 비하여 약 절반 정도만이 공정성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Marwell과 Ames 실험의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표본집단에서 비전공학생은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학생으로 이루어진 반면, 경제학 전공학생은 University of Wisconsin 대학원 1년생으로 이루어져 경제학뿐 아니라 연령, 전반적인 이해도 등에 차이가 있고, 경제학 전공 대학원생은 대부분 남성이라는 점이 이러한 결과를 야기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⁷⁾.

3. 자선기금에 대한 설문조사

세번째의 예로서 자선기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들 수 있다. 23개 분야 1,245명의 대학교수에게 연간 자선단체 기부액에 대한 설문지를 돌린 결과 576명이 응답하였다: 경제학(75명), 기타 사회과학(106명), 수학·컴퓨터 및 공학(48명), 자연과학(98명), 인문과학(94명), 건축 및 예능(68명), 교육·경영·간호 등 전문직(87명). 그 결과 전혀 기부하지 않은 비율을 볼 때, 경제학이 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가 그룹이 1.1%로 가장 낮으며, 나머지는 2.9~4.2% 범위에서 나타났다.

절대액 기준으로 경제학자들의 기부액 중간치(median)는 다른 집단 전체의 기부액 중간치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학자들의 연봉이 평균적으로 높은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4. Prisoner's Dilemma

Cornell University 학생 중에서 경제학 전공그룹과 비전공 그룹에서 표본

표본집단에서 경제학 전공자와 비전공자는 학력과 연령, 전반적인 이해도 등에서 차이가 났고 경제학전공자의 대부분이 남성이었다는 점도 이런 실험결과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7) 이러한 종류의 실험에 있어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뚜렷하게 비협조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risoner's dilemma 을 구성하여 사전에 prisoner's dilemma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3명씩의 소
 게임 결과 경제학 그룹으로 나누어 각자는 자기 그룹의 2사람과 각각 1번씩 게임을 하였다. 보상
 전공자의 배신율은 은 실제 돈으로 하며, 각자의 반응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 게임 후에도
 60.4%, 비전공자의 상대방의 반응에 대하여 알 수 없도록 하였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에
 배신율은 38.8%로 대하여 서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 독방에서 각각 상대 2사람에 대한 자
 나타냈다. 기의 행동을 기록하였다.

〈그림 1〉 Prisoner's Dilemma 게임에서의 보상액
 참가자 X

		협조	배신
참가자 Y	협조	\$2 for X \$2 for Y	\$3 for X \$0 for Y
	배신	\$0 for X \$3 for Y	\$1 for X \$1 for Y

이 게임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다른 형의 실험을 행하였다.

- 1) 무제한형(unlimited version): 서로를 사귀는 기간 동안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 그러나 비밀이 지켜지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려준다.
- 2) 중간형(intermediate version): 서로 사귀는 기간을 30분까지 허용. 약속을 하지 않는다.
- 3) 제한형(limited version): 서로 사귀는 시간을 10분 이하로 제한. 약속을 하지 않는다.

총 267 게임을 한 결과 경제학 전공자의 배신율은 60.4%, 비전공자의 배신율은 38.8%로 나타났다. 무제한형의 경우, 약속을 허용하면 경제학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배신율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데 비하여(경제학 28.6%, 비전공 25.9%), 중간형과 제한형의 경우, 두 그룹 모두 배신의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나 경제학 전공자의 경우가 보다 높아져서 71.8%를 기록했다(비전공자의 경우는 47.3%).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경제학 전공자는 대부분 남성인 점을 감안하여, 성(性), 나이, 실험조건을 통제한 회귀분석을 행하였다(〈표 3〉). 각 학생이 게임을 두 번씩 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반응은 통계적으로 독립적이 아니므로 한 사람에

계는 협력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배신한 표본 60명을 제외한 207명의 표본을 이용한 결과가 <표 3>에 나타나 있다.

<표 3> 조건별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협조 (0) 또는 배신 (1)			
변수	계수	표준오차	t 값
상수	0.579127	0.1041	5.57
전공	0.168835	0.0780	2.16
제한	0.00	-	-
중간	-0.091189	0.0806	-1.13
무제한	-0.329572	0.0728	-4.53
성(性)	0.239944	0.0642	3.74
학년	-0.065363	0.0303	-2.16

주: 종속변수는 0(협력) 또는 1(배신)
 더미변수는 전공=1(경제학 전공), 0(비전공)
 제한, 중간, 무제한= 각각 해당경우에 1, 아니면 0
 성=1(남성), 0(여성)
 학년=1(1학년), 2(2학년), 3(3학년), 4(4학년)

자료: FGR(1993), p.165.

<표 3>에 의하면 남자일 경우 배신할 확률이 0.24 증가하며, 경제학 전공자의 배신확률은 0.17 증가하였고, 사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협력의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신확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경제학 전공자의 경우, 게임의 목적을 보다 이기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기 때문이고, 비전공자의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느낌, 인간성 등의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5. 선택효과 대 학습효과

앞서 Carter와 Irons(1991)의 ultimatum게임 실험에서 선택효과는 있고, 학습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하여 FGR은 두 가지 실험을 통하여 학습효과의 유무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만일 학습효과가 있다면 prisoner's dilemma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배신율이 높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상급생으로 갈수록 배신율이 줄어드는 결

경제학 전공자의 경우, 게임의 목적을 보다 이기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기 때문이고, 비전공자의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느낌, 인간성 등의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prisoner's dilemma 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경제학 전공학생의 배신율이 거의 줄지 않는 결과를 보아 학습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를 발견하였고, 따라서 경제학 전공자와 비전공자 사이에 배신율이 줄어드는 차이를 비교하여 보았다.

- 비전공 하급생(1,2학년) 배신율 53.7%, 상급생(3,4학년) 배신율 40.2%
- 경제학 전공하급생(1,2학년) 배신율 73.7%, 상급생(3,4학년) 배신율 70.0%

경제학 전공 학생의 배신율이 거의 줄어들지 않는 위와 같은 결과는 학습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FGR은 Cornell University 미시경제학 입문 학급 A, B와 천문학 입문 학급을 대상으로 정직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학습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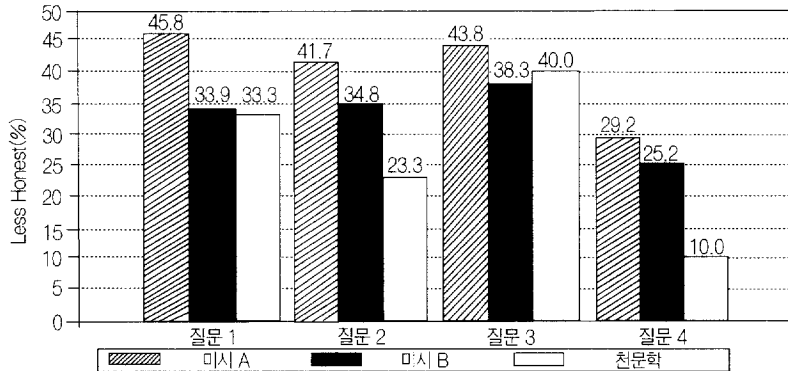
- 개인기업 사장이 10대의 PC를 구입했는데, 컴퓨터 회사가 실수로 9대 가격만의 청구서를 보낸 경우,
 - (질문 1) 개인기업 사장이 컴퓨터 회사에 실수를 지적해 줄 확률은?
 - (질문 2) 당신이 개인기업 사장이라면 실수를 지적해 줄 확률은?
- 100달러가 든 봉투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주인의 주소와 이름이 써어 있음),
 - (질문 3) 당신이 그 봉투를 잃어버렸을 경우, 그 돈을 돌려받을 확률은?
 - (질문 4) 당신이 그 돈을 발견했을 때, 돌려줄 확률은?

이상의 4가지 질문을 학기초와 학기말 2번에 걸쳐 실시하여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학기말에 확률이 올라갔으면 '보다 정직해짐(more honest)'으로, 확률이 내려갔으면 '덜 정직해짐(less honest)', 변화가 없으면 '변화없음(no change)'으로 표시하였다.

미시경제학 A의 교수는 산업조직과 게임이론을 전공했으며 수업시간중에 prisoner's dilemma와 같은 주제를 강조하여 언급하였고, 미시경제학 B의 교수는 중국경제발전 전문가였다.

<그림 2>에서 미시 A, 미시 B, 천문학의 순서로 '덜 정직해짐'의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학습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림 2〉 신입생 정직성 조사 결과



주: 질문 1) 사장이 계산서의 잘못을 지적할 확률은?
 질문 2) 당신이 계산서의 잘못을 지적할 확률은?
 질문 3) 남들이 당신의 100달러를 돌려줄 확률은?
 질문 4) 당신이 남의 100달러를 돌려줄 확률은?

자료: FGR(1993), p.169.

YGP는 실험과 실제 사회에서의 행태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분실봉투실험과 정직성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코노미스트들이 이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Ⅲ. 비이기주의적 성향

FGR의 결과에 대하여 YGP는 실험과 실제 사회에서의 행태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분실봉투실험과 정직성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코노미스트들이 이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1. 분실봉투(Lost-Envelope) 실험

YGP는 보다 실제에 가까운 상황에서 실험을 행하였다.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서 64개의 학부 수업(32개는 상급생 경제학 수업, 32개는 상급생 다른 과목 특히 정치학, 심리학, 역사) 교실을 이용하여,
- 1993년 가을학기과 1994년 봄학기의 1년에 걸쳐 실험을 행하였다.
- 피실험자들에게 실제 상황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봉투를 봉하지 않고 우표를 붙이고, 받을 사람 이름과 주소를 쓰고, 안에는 꾸어준 돈을 갚는다는 쪽지와 함께 1달러짜리 10개가 든 봉투를 수업시간 시작 전에 몰래 해당 교실에 놓아두었다⁸⁾.

8) 1달러짜리를 쓰는 이유는 전부 돌려주지 않고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를 고려한 것인데, 돌아온 봉투 중 일부만 돌아온 봉투는 없었다. 빈 봉투만 돌아온 것이 한 건 있었는데 발신자의 주소가 'Mr. IOU, 1013 Indebted Lane, Bankruptcy City, Mississippi 30335'로 씌여 있었고, 이 봉투는 비경제학 교실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YGP는 학급별로
응답의 평균을
학기초와 학기말에
비교하였는데 비하여,
FGR은 각 개인
응답자가 학기초와
학기말에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비교한
점에서 차이가 난다.

- 각 봉투마다 다른 이름과 주소를 써서 어느 봉투가 경제학 수업 교실에 놓아둔 봉투인가를 구분할 수 있게 하였다.
- 단, 경제학 수업시간에 아무도 그 봉투를 줘지 않았다면 그 다음 시간(주로 비경제학 시간)에 주어져 돌아왔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 결과 경제학 교실의 32개 봉투 중 18개(56%)가 돌아왔고 비경제학 교실의 경우는 10개(31%)만이 돌아왔다. 따라서 보다 실제와 가까운 상황에서 FGR의 결과와는 다른 결론을 얻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도 가능하다. 경제학은 다른 과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특히 상급수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모범적인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는 경제학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원칙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다.

2. FGR의 정직성 조사와의 비교

YGP는 FGR의 정직성 조사 실험을 반복하여 보았다. 1993년 가을 학기초와 학기말에 경제학 입문 수업 2개와 생물학, 심리학 입문 수업 등 모두 4개 수업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 수강생은 대부분 신입생으로, 학급 규모는 130~175명이었다. 경제학 입문 교실 중 한 교실(경제학 A)의 경우에는 교수가 의도적으로 협력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표 4〉 조사 결과

질문	경제학 A		경제학 B		생물학		심리학	
	1차 조사	2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1	33.4	32.1 ²⁾	34.4	27.3 ^{2),3)}	34.0	30.9 ²⁾	30.8	35.4 ¹⁾
2	56.9	54.0 ²⁾	49.9	45.9 ²⁾	59.0	55.9 ²⁾	46.0	51.7 ¹⁾
3	24.5	28.8 ^{1),3)}	23.0	24.6 ¹⁾	25.1	25.8 ¹⁾	28.2	26.1 ²⁾
4	68.1	67.4 ²⁾	67.1	61.3 ²⁾	72.4	70.5 ²⁾	65.7	68.3 ²⁾

- 주: 1) 2차 조사에서 협력도가 높아진 경우
 2) 2차 조사에서 협력도가 떨어진 경우
 3)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
 1.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는 없었음.
 2. 4가지 질문은 (그림 2)의 질문1~질문4와 같음.

자료: YGP(1996), p.183.

그 결과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학 수업의 경우, 8개 중 6개의 경우가 학기말에 비협조적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 중 한 개만이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오히려 보다 협조적으로 된 경우도 한 개가 있는데 이 역시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경제학의 학습이 학생들을 보다 비협조적으로 만든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었다.

YGP는 학급별로 응답의 평균을 학기초와 학기말에 비교하였는데 비하여, FGR은 각 개인 응답자가 학기초와 학기말에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비교한 점에서 차이가 난다. 따라서 YGP는 통계적 유의성 검증이 가능한 데 비하여 FGR은 그것이 불가능하였다. 체계적인 학습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개인별 반응의 차이를 추적하는 것이 좋으나, 개인별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신분이 확인이 필요하고, 이는 과장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분실봉투 실험과 정직성 조사를 비교하여 보면, 분실봉투 실험에서는 64개 중 28개(44%)가 돌아왔고, 정직성 조사에서 100달러를 돌려줄 것이라고 대답한 확률은 경제학, 비경제학 모두 68% 정도이다(질문4). 따라서 그들의 실제 협력 정도를 과장해서 보고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실제 반환율과 가상 반환율과의 차이는 경제학 전공 학생의 경우가 비전공 학생의 경우보다 작다. 즉, 경제학 전공자의 경우는 68% 대 56%인 데 반하여, 비전공자의 경우는 68% 대 31%이다. 경제학 전공 학생이 그들의 실제 행동을 보다 솔직하게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질문 3과 질문 4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가리지 않고 남들이 100달러를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25%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자신들이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68%에 이르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응답자들이 자신들의 협력적 성향에 대하여 과장하는 성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Sudman과 Bradburn(1982), Neill et al.(1994), Cummings et al.(1995)⁹⁾ 등은 가상적인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가 실제 지불의사보다 훨씬 큰 것을 보여주고 있다.

IV. 결론

Irons, Marwell과 Ames, FGR 및 YGP 등의 실험은 모두 나름대로 흥미로운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험들

분실봉투의 실제반환율과 가상반환율의 차이는 경제학전공자가 비전공자보다 작다. 즉, 경제학전공자가 그들의 실제행동을 보다 솔직하게 보고하는 것이다.


9) S. Sudman and N. Bradburn, *Asking Questions*, San Francisco: Jossey-Bass, 1982; H. Neill et al., "Hypothetical Surveys and Real Economic Commitments," *Land Economics*, May 1994, pp.145~154; R. Cummings, G. Harrison and E. Rustrom, "Homegrown Values and Hypothetical Surveys: Is the Dichotomous Choice Approach Incentive Compatible?,"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95, pp.260~266.

“... that economists are not more selfish, but only more acceptant of human behavior.”
 - Hirshleifer(1994)

이 사회과학적 실험으로서 갖는 한계를 고려할 때 이를 바탕으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예를 들면 가상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행동을 평가할 때는, 그들의 실제 협력도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솔직함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응답자들은 ‘옳은 답(the right answer)’,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답으로 대답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코노미스트들의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가 적다는 것은 실제로 그들의 기부액이 가장 적은 것이 아니라, 가장 솔직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다.

공익(公益)과 사익(私益)이 대립하는 경우, 모든 사람이 공익을 우선하여 협력적이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주의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이 경제학을 배웠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경제학은 단지 그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다. 경제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남으로부터 어느 정도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경우에는, 그 반응은 일반 대중의 실제 협력률을 쫓 수 있는 믿을 만한 척도와 비교해야 한다. 만일 경제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사회는 덜 협조적이라는 것을 배운다면,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달러가 든 봉투를 돌려줄 확률이 학기초에는 80%에서 학기말에 30%로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일반 대중의 반환 참여가 80%에 가까운가, 30%에 가까운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경제학 공부를 하는 것이 비협조적 행동을 조장한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경제학은 합리적·이기적 행동을 가정하고 있기는 하나, 자발적 무역과 교환이 주는 상호이익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으며, 승자와 패자의 이분적 논리가 아니라 상호 이익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인간의 실제 형태는 순수 이론적인 동기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실제 사회생활은 일회성 게임이 아니라 연속게임이다. 인간관계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며 비협조적이며 이기적인 행동은 남들로부터도 비협조적인 반응을 불러온다. 단기적인 안목에서의 행동이 장기적으로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모른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Hirshleifer(1994)¹⁰⁾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코노미스트들이 보다 이기적인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다만 인간의 행태에 대하여 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는 표현이 매우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 

10) J. Hirshleifer, “The Dark Side of the Force,” *Economic Inquiry*, January 1994, pp.1~10.



정책토론투리포트

● 한일 조세조약의 문제점

- * 이 원고는 지난 12월 5일에 한국조세연구원과 세법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일조세조약의 개정현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日本關西大學 村井 正 교수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한일조세조약의 문제점

— OECD 모델 대 국제연합모델형으로부터 OECD형으로 —

關西大學 法學部 教授 / 村井 正

번역 : 신기선 / 한국조세연구원 주임연구원

1. 국제조세질서의 구축 : 과세관할의 배분

세계 각국이 개방경제정책을 취하는 한, 기업활동은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것이며, 국경을 넘어선(cross border) 기업의 거래가 행해지는 한, 과세관할권의 행사는 여러 국가와 관련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관할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는 수입국(host country)에 소득원천(source)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그러나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는 기준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의 사용대가(royalty)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 중 어느 국가에 소득의 원천지가 존재하는가를 둘러싸고 일본의 판례가 중요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동경지방법판소 1985.5.13 판결 577호 79항, 동경지방법판소 1992.10.27 세무소송자료 193호 162항 이하). 이는 소득의 원천지를 판정하는 요소가 지적재산권의 사용장소(사용지기준주

의, 미일조세조약 6조 3항)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이 사용되는 장소가 2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 어느 국가를 사용료의 원천지로 판정해야 하는가는 계약의 해석에 곤란한 문제를 야기한다. 과세관할을 특정 국가에 적정하게 귀속 또는 배분하지 않는 한 이중과세(경우에 따라서는 다중과세)를 피할 수 없다.

과세관할의 배분 등의 국제조세법에 대하여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은 비교적 판례법이 축적되어 있지만 일본의 국제조세판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판례법의 형성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다만, 최근에 점차로 본격적인 국제조세판례가 등장하고 있다(가령 연구개발비 등의 다국적기업 구성원간의 배부에 대한 분쟁인 동경지방법판소 판결(1993.10.4.)과 일본 방송국이 미국으로부터 영화저작물을 방송하고 있는 경우의 방송권료가 「저작권의 사용료」를 구성하는가에 대한 분쟁인 동경지방법판소 판결(1994.3.30.)). 일본의 국제조세법의 전개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판례의 경

향은 환영해야 할 일이다.

2. OECD를 중심으로 한 국제조세질서의 구축

국제조세 마찰이라 불리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준거가 될 국제적 규칙(rule)이 확립되지 않은 데서 하나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미국은 자국의 재정사정 때문에 자국이 약속한 국제규칙(조세조약)조차 무시하고 국내 세법을 개정해버리는 경향이 보이는데 조세조약의 무시(tax treaty override)라 불리는 사태가 그것이다. 미국 연방정부가 체결한 국제조약을 연방법과 동일한 지위에 놓고도, 후법이 우선한다는 미국 헌법구조의 특이성을 이유로 하여 국제조세질서의 형성을 부정하는 것은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국제조세 마찰이라 불리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준거가 될 국제적 규칙이

확립되지 않은 데서 하나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이다. 설령 자국에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해도 국제법 위반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조세질서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지 않으면 국경을 넘어선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할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없게 된다. OECD를 중심으로 한 국제조세규칙의 제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을 동반한 엄격한 의미에서의 국제조세질서는 아직 확립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간 계약일 경우 조세조약은 늘 OECD 모델조약을 기초로 하여 체결되고 있고, 이 조세조약의 네트워크(network)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OECD 모델조약의 실효성은 증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OECD 모델조약이 적용되는 범위가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국제조세질서라 불러야 하는 것이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면, 각국의 국제조세정책을 평가할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은 OECD 모델조약 및 OECD의 각종 보고서일 것이다.

OECD에서 국제조세규칙에 관한 합의를 형성하는 데 미국의 존재는 무시할 수 없다. 현재 OECD에서 주도권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나라는 유럽국가들이지만, 미국은 국제조세규칙을 형성하는 데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델조약의 중요조항에 대하여는 유보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많은 유보조항을 두는 것과 동시에 자국의 국제조세(조약)정책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조세조약에 대한 미국 모델을 공표해 왔다(최근의 것으로는 United State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of September 20, 1996이 발표된 바 있다). 예를 들면 조세조약의 남용에 대한 조약편익제한조항(anti-treaty shopping)의 도입이 그것이다. 미국 모델이 OECD 모델의 형성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은 OECD 모델조약의 1992년 개정주석에서 조약남용에 대한 제한조항이 평가되었으며, 최근 미국과의 쌍무간조약뿐 아니라, 일본-싱가포르 조세조약(1994) 22조 2항 등에서도 조약편익제한조항이 도입되고 있는 것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OECD뿐

아니라 미국의 동향에 대하여도 앞으로 시선을 뻗 수 없을 것이다.

3. 국제조세질서와 한국과 일본의 역할

국제조세질서의 구축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는 일본의 입장(stance)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의 국가는 국제조세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 약간의 편향(bias)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은 헌법상 國際協和主義(헌법전문 98조 2항)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와 배치되는 국내법의 정립은 위헌이라고 해석하는 귀중한 존재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세조약이나 확립된 국제조세법에 반하는 각국의 국내조세법에 대하여 일본이 리더십을 가지고 가장 엄격한 입장(stance)을 취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OECD 보고서에 비추어 본다면 독주 기미를 보이는 미국조세입법(국세청 1992년 규칙안, 1993년 잠정규칙, 1994년 최종규칙)에 제동을 건 OECD 가이드라인 작업모임에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것은 특기해야 할 일이고 동시에 평가해야 할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OECD를 중심으로 한 이후의 국제조세질서 구축에서 일본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크며, 앞으로는 새롭게 OECD에 가맹한 한국과의 연계가 매우 기대된다.

4. 국제환경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한일조세조약 개정의 기본방침

현행 한일조세조약이 체결된 1970년 당시

에는 한국은 세율을 정비중에 있었고, 국제청이 신설(1996년)된 것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일조세조약 체결의 계기는 1964년 일본상사가 한국 조달청에 납입한 거래에 대하여 확정소득과세, 본사경비의 공제, 환율환산 등의 취급을 둘러싸고 발생한 과세문제 때문이며,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조세조약의 체결이 시급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상사에 대한 고율의 인정과세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을 인정한 조세조약은 일본의 조약체결 사례 중 드문 경우이다. 다른 조약의 사례와 비교하여 한일조세조약의 내용이 구체적인 것은 그러한 구체적 분쟁과 관련하여 교섭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후 한국의 경제성장은 눈부시게 진행되었고, 1996년 9월 한국은 마침내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OECD 가맹국이 되었다. 이번의 개정은 OECD 가맹국간의, 더 나아가 아시아 우방들과의 조약 개정이며, 이후 아시아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약은 현재 개정중이고 일본인 학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가장 신뢰받는 국제조세질서라고 해야 할 OECD 모델에 이 조약이 얼마만큼 수렴하는가가 최대의 관심이다.

5. 개정의 문제점 : 항구적 시설

항구적 시설(이하 P.E로 약칭함)의 개념은 원래 유럽 국가들에서는 원천관할을 제한하기 위해 채용된 것이다. 국제과세에서 P.E가 채용된 배경에는 역사적 경위도 있다. 원천관할에 의한 과세의 근거는 원천지국에 의한 이익의 제공에서 구해지며 또한 원천지국과 비거

주자 사이에 어떤 경제적 연관(connection, nexus, Anknüpfung)이 요구된다. 어떠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원천에 대해서는 그 경제적 귀속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P.E의 개념은 적극적으로 과세관할권을 확대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원천지국의 과세관할을 가능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점이다. P.E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OECD의 입장(stance)에 대하여 국제연합은 과세관할의 확대를 추구한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수용하여 OECD의 P.E 개념을 수정한 것이다. OECD는 국제적 이중과세의 배제를 거주지국 과세원칙에서 찾은 결과 원천지국의 과세관할이 협소해지고 그 결과 개발도상국의 입장과 충돌하게 되었다. 사람, 물건, 금전의 흐름(flow)이 쌍방향인 선진국간의 경우라면 OECD 모델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거래의 흐름은 일

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현행 조약에서 확대된 P.E 개념(재고보유대리인, 주문취득대리인, 건설공사 및 건설공사감독(6개월 초과)은 OECD 모델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재고보유대리인, 주문취득대리인, 건설공사감독은 P.E 개념에서 제외하고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OECD형(12개월 초과)을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본도 OECD에 가입할 때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을 경험했다. 물론 일본도 선진국과의 조세조약에서 완전하게 OECD 모델을 수용할 이유는 없으며 부분적으로는 항상 원천지국 대우를 남겨두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하면서 이들과 동반하기 위하여 많은 진통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이 OECD 모델형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이 가지고 있던 과세관할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일부는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는 한국이 P.E 개념에 대해 OECD형으로의 전환에 합의할 것이라고 믿는다.

OECD는 국제적 이중과세의 배제를 거주지국

과세원칙에서 찾은 결과

원천지국의 과세관할이 협소해지고 그 결과

개발도상국의

입장과 충돌하게 되었다.

방통행이고, 그렇다면 개발도상국이 원천지국으로서 과세관할의 확대를 강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 한·일경제관계를 고려한 P.E 개념은 OECD 모델에 수렴할 수밖에 없

6. 개정의 문제점 : 사업소득

- 종합주의 내지 수정귀속주의에서 귀속주의로

현행 조약 6조 2항은 「해당 상대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그 거주자 또는 법인의 선(善)소득에 대해」 상대 체약국의 P.E에 과세하는 종합주의(entire income principle)을 채용한다. 원천지국의 과세관할을 가능한 한 제한하고 거주지국의 과세관할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OECD 모델의 사고방식은 P.E 개념

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데, 이 사고방식에 더욱더 철저하면 P.E 과세에 대하여도 「모든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P.E에 귀속하는 소득에만 한정해야 한다. 이러한 OECD 모델의 사고방식을 귀속주의(attributable income principle)라 한다. 종합주의가 P.E에 흡인력(force of attraction)을 인정하여 「모든소득」 즉 「모든 국내원천소득」에 과세하는 방식인 것에 대해 귀속주의는 P.E에 「귀속하는 소득」, 「귀속되는 소득」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종합주의에서 결정적 요소는 「원천」(source)임에 대해 귀속주의에서 결정적 요소는 「귀속」(attribution)이다. attribution, attributable 쪽이 P.E 과세를 보다 제한하는 요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조세조약 내지 국내세법이 「원천」의 범위나 「귀속」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조약이나 국내세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반드시 「귀속」이 보다 제한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OECD 모델은 귀속주의를 채용하고 있고 일본이 체결하고 있는 조약도 OECD 모델의 노선에 따르고 있다. 단,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조세조약에 의해 P.E 과세를 귀속주의로 전환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내세법도 P.E과세를 귀속주의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일본의 국내세법은 철저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종합주의가 남아 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귀속주의에 대하여도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이 일치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현행 한일조세조약의 큰 특징은 사업소득과 세에서 종합주의를 채택하여 P.E 과세에 대하

여도 「귀속」기준에 의해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원천」기준으로 과세관할을 배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조약은 사업소득과세에서도 구입판매 및 제조판매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원천의 일부는 구입지 국가 또는 제조지 국가에 배분하고 일부는 판매지 국가에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귀속주의로

현행 한일조세조약의 큰 특징은

사업소득과세에서 종합주의를 채택하여

P.E 과세에 대하여도 「귀속」기준에 의해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원천」기준으로 과세관할을

배분하고 있는 것이다.

전환한다면 이러한 원천배분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조약이 현행보다도 간소화되는 것인가?

7. 개정의 문제점 : 투자소득(배당, 이자, 사용료)과세

일본의 투자소득과세에 대한 정책은 반드시 OECD 모델에 정합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배당·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지국 대우의 사고방식에 의해 원천지국에 응분의 과세관할이 남아있지만 OECD는 그 한도세율을 억제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배당, 이자, 사용료 등에 대하여도 12%의 한도세율은 완화해야 할 것이다. 이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료 과세이다.

OECD 모델에 의하면 사용료 과세의 관할

은 무엇보다 거주지국(대체로 Licensor 국가라 해도 좋을 것이다)이다. 단, 일본이 선진국과 맺은 조세조약은 전부 OECD형을 취하지 않고 한·일과 같이 오히려 국제연합형을 채용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기술중진국으로서 기술수입에 주력했던 시대의 잔재이다. 일본의 기업은 Licensee로서 기술수입의 대가로 막대한 사용료를 지불한다. 세무당국 입장에서 이 사용료로부터의 원천징수세는 매우 매력적인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은 지금까지 사용료 과세에 대하여는 오히려 국제연합형을 채용해왔다. 그러나 OECD 가맹국으로서 한국과 일본은 이제 서서히 OECD형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아닐까? 원천징수국 대우에 깊은 이해를 보인 Klaus Vogel조차도 지적재산권의 사용대가에 관한 과세관할에 대하여는 지적재산권이 거주지국에서 얻어진 「정신적 자본(geistes capital)」이라는 이유로 거주지국 관할을 주장하고 양보하지 않았다.

현재 한·일간의 기술이전 실적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 세무당국 입장에서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매력적이며, 일본이 현재에도 미일조세조약을 필두로 하여 OECD형으로의 탈피를 실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로부터도 OECD형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앞 4항의 기본방침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아시아의 2대 선진국인 한국과 일본의 조세조약이 개정되어 OECD형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일까? 나는 OECD 모델을 무엇보다 신뢰해야 할 국제규칙으로 생각하므로 바람직한 국제조세질서의 구축을 위하여도 한·일 양국이 사용료 과세에 대해 획기적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8. 개정의 문제점 : 간주외국세액공제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는 독일과 함께 「간주외국세액공제」에 대해 깊은 이해를 보여왔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자본수출중립성(Capital Export Neutrality)에 초점에 맞춘다면 이 제도는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종전부터 일단 이 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된 이후 어떠한 기준을 충족하면 이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일본에서 논의되어 왔다.

간주외국세액공제제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종래 생각되어 온 기준으로서 세계은행 졸업기준(졸업과 동시에 세계은행이 신규융자를 하지 않는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의 개발도상국리스트, UNCTAD의 LLDC(후발개발도상국), IMF의 개발도상국기준 등이 있다.

간주외국세액공제에 대하여 1985년 10월 일본 세제조사회 답신에서는 「(간주외국세액공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이라는 정책적 배려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세부담의 공평성 등 과세기본원칙에 입각할 필요도 있으므로 이것을 인정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된다」라고 회신하면서 동 공제에 대해 비로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이후 소극적 정책으로 전환한다. 한국에 대하여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이제는 개발도상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행의 간주외국세액공제는 틀림없이

폐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9. 결론 : 조세조약의 해석

한·일조세조약의 규정이나 문구는 국내세법의 그것에 비해 모호하다. 그렇다면 장래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을 둘러싼 한·일간의 분쟁은 불가피하다. 현행 조약 가운데에도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해석적용에 관한 규정(2조 2항)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채약국의 법령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것이 조약체결시의 법령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약 해석적용시의 법령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현재에는 Melford사건의 영향을 받아 정태적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동태적 해석을 취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고, 1995년 OECD 모델에서는 조약의 해석적용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2조 2항에 대하여도 1995년 개정된 OECD 모델조약 3조에 따른 개정이 있어야만 한다. 다만, 이 경우 미국 모델에서는 「문맥」의 요건 외에 「권한있는 당국이 모델조약 25조의 상호협약의 절차 규정에 따라 공통의 의미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는 한」이라는 요건이 들어가 있다. 한일조세조약에서도 상호협약의 절차를 매개로 하여 해석상의 합의에 의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그러나 이 모델에 의한 방법은 과세관할을 양보하고 싶지 않다는 미국의 강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고 조세조약이 타국의 과세관할의 제한을 의미하며, 일정한 양보를 의미하는 것인 이상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5조의 소위 Saving Clause도, CA협약과 같이 주권의

제한, 과세관할의 제한에 대한 강한 반대의사의 표명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과의 조약에서 미국으로부터 도입을 강하게 요청받지 않는 한 꼭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조세조약의 해석에 관한 2조 2항의 규정은 너무나도 간단하여 이후 발생할 조약해석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또한 조약법에

간주외국세역공제제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관련된 조약 31~33조(조약의 해석)도 충분하지 않다. 이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조세조약의 해석에 관한 기준은 1991년 5월 13일 American Law Institute가 제시한 'Recommendations adopted by the American Law Institute concerning Treaty Interpretation' 라는 것을 지적해 두자. 만약 가능하다면 한일조세조약 2조 2항에 ALI가 제안한 「조세조약의 해석」 권고를 참고한 기준을 삽입해 보면 어떨까? 해석요소로서 OECD 모델조약 및 commentary는 무엇보다 같은 조문 규정을 해석한 미국의 판결, 조약해석에 관한 채약상대국 법원의 판결 같은 조약조문을 해석한 다른 국가 법원의 판결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조세조약의 해석이 직무인 한국과 일본의 국제조세법 전문가에게 지구상의 모든 조세조약 및 그 해석에 관한 판결이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까? KIP

인터넷과 예산 및 조세정보

손병준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I. 서론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개인컴퓨터가 보급되었고, 이로 인해 개인컴퓨터의 활용범위는 그 무엇보다 빠른 추세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 같은 환경하에서 개인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계 어느 곳이든지 그 자리에서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의 사용이야말로 하나의 획기적인 발전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지난 몇년간 '넷맹'이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 쓰여질 정도로 '인터넷'은 유행처럼 모든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터넷을 배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많은 사설학원들의 인터넷 강좌가 성행할 정도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인터넷은 종종 바닷가의 모래에 비유된다. 이는 인터넷 속에는 무한한 정보가 있고 또한 이들 정보들은 어느 누구든 찾는 이들에게 제공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무수한 모래 속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기가 어

렵다는 의미 역시 내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인터넷 초보자들이 인터넷을 단순한 서신교환 또는 오락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인터넷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잘 활용한다면, 누구라도 얻고자 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인터넷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무수한 정보 가운데 예산 및 조세정보에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재정정보의 현실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인터넷 개요

1. 인터넷이란?

인터넷은 Internetwork의 준말로써 2개 이상 이 연결된 네트워크를 가리킨다. 인터넷이란 쉽게 말하자면 전세계의 컴퓨터를 서로 연결한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이라고 할 수 있다. 1969년 미 국방성 산하의 ARPA(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라는 군사과학연구기관에서 연구원들간에 상호정보교환 및 기술교류를 위한 네

〈그림 1〉 미국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



트위크 체제를 구성하면서부터 인터넷의 역사는 시작됐다.

그 동안 꾸준한 기술발전과 향상된 네트워크 체제를 통하여 각 대학과 연구소들이 이들 네트워크에 연결되었고, 더 나아가 세계 각국의 연구소 및 대학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ARPA 네트워크의 후신인 미국과학재단 네트워크(NSFNET)에 연결되었다.

현재 전세계의 6천만 인구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성장률은 연 700%에 이른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4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2.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인터넷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다양한 형태로 전송된다. 그 형태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WWW(World Wide Web; 일반적으로 Web '웹' 이라 함)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 인터넷 서비스와는 달리 사진과 그래픽, 음성, 동영상을 '하이

서비스의 종류	내용
전자우편(E-Mail)	인터넷상의 다른 사용자와 편지를 주고 받는 서비스로 전세계 어느 사용자에게도 편지를 단 몇 분 이내에 보낼 수 있으며 현재 사용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원격로그인(Telnet)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원격지에서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파일송수신(FTP: File Transfer Protocol)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간에 파일을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
파일검색(Archie)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 중에서 원하는 파일이 있는 위치를 검색하는 서비스
고퍼(Gopher)	인터넷 BBS 서비스로서 국내의 PC 통신처럼 메뉴형식과 그림 등이 없이 문자로만 구성되어 있다
대화실(IRC: Internet Relay Chat)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통하여 사용자들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 과거에는 문자 위주였으나 현재는 음성도 전달하여 전화와 같은 기능까지 한다.
게시판(USENET)	게시판과 같은 원리로 특정 주제에 대해 서로의 의견·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
정보검색(WWW: World Wide Web)	인터넷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통합 서비스. 그림, 소리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한다. 각 지역(사이트)은 고유의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는 검색도구(Netscape, MS Internet Explorer 등)를 이용하여 접속할 수 있다.

퍼 텍스트'라는 방법으로 편리하게 볼 수 있게 했다. 하이퍼 텍스트란 화면상의 문서에서 좀더 자세하게 알고자 하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다른 관련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Ⅲ. 주요국의 인터넷 재정정보

1. 인터넷에 열린 정부 - 미국, 캐나다

미국정부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재정에 관련된 정보도 쉽게, 그리고 자세히 얻을 수 있다. 미국정부는 인터넷이 일반화된 점을 감안하여 많은 민원업무도 인터넷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터넷을 통해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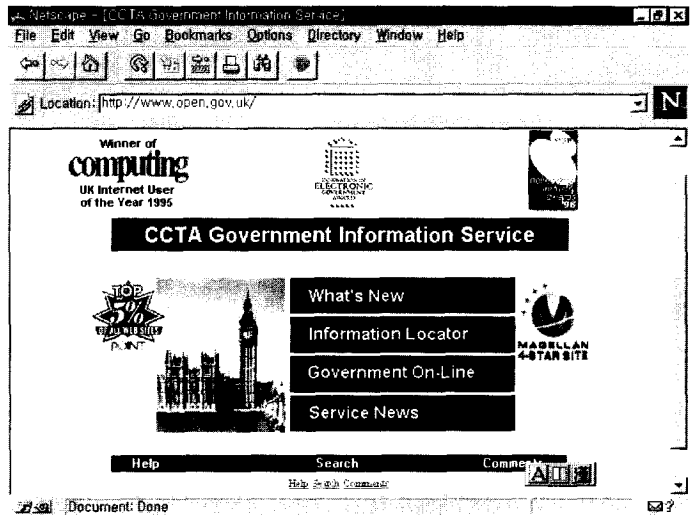
미국정부의 예산에 관련된 정보는 매년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몇 달 전 논란이 되었던 1997년도 예산안도 미국정부문서 제공서비스(<http://www.doc.gov/BudgetFY97/index.html>)로 연결하면 쉽게 접할 수 있다. 아울러 모든 예산자료는 사용자들을 위하여 PDF(Portable

Document Format)¹⁾ 파일형식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DF 파일형식의 장점은 하나의 책을 컴퓨터화시켰다는 데 있다.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는 것과 책자를 보는 것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용이 용이하고 출력을 통하여 책자와 똑같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미국의 1997년 예산안은 일반국민들을 위해 쉽게 설명된 자료, 경제전망, 통계자료 등으로 분류되어 인터넷으로 제공된다.

미국 국세청(<http://www.irs.ustreas.gov>)은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나 조세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곳으로 연결하면 국세청과 관련된 보도자료, 조세관련 소식, 개인 및 기업을 위한 조세정보, 세법, 조세관련 통계, 각종 민원실에서 제공하는 서류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각종 조세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관련 책자들을 PDF 파일형식으로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납세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찾지 못하는 정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때는 전자우편을 통해 담당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국세청장에게까지도 전자우편으로 서신을 보낼 수 있다. 참고로 미국 주정부의 재정관련 정보

1) PDF 파일은 Adobe사의 Acrobat Reader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읽을 수 있다. 프로그램은 <http://www.adobe.com/prodindex/acrobat/readstep.html>로 접속하여 인터넷상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림 2) 영국정부의 정부종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는 정부 Census기관(<http://www.census.gov/ftp/pub/govs/www/index.html>)에서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정부도 미국정부와 거의 유사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1996년 예산자료는 캐나다 재무부(<http://www.fin.gc.ca/budget96/docliste.htm>)로 접속하면 된다. 그 밖의 조세관련 자료들은 캐나다 국세청인 RevenueCanada(<http://www.revcan.ca/menu.html>)로 접속하면 납세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설명을 비롯하여 조세관련 통계, 각종 서류양식들이 제공된다.

2. 유럽의 인터넷정부 - 영국, 프랑스

영국 재무성인 HM Treasury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http://www.hmtreasury.gov.uk>)로 접속을 하면 각종 재정에 관한 소식과 예산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영국 국세청(<http://www.open.gov.uk/inrev/irhome.html>)도 인터넷으로 세입예산관련 정보, 세무보고에 필요한 상식, 교육용 자료 등을 제공하지만 그 내용이 재정연구를 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자료를 구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이 밖에도 영국정부는 정부종합정보서비스(<http://www.open.gov.uk>)를 인

터넷상에 구축하여 다른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들을 사용자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비영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불어할자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불어를 알지 못하는 사용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프랑스 재무성(<http://www.tresor.finances.fr/oat/us/sommaireus.html>)에서는 1997년 예산자료의 중요부분만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다. 1997년 예산안의 중요부문 및 경제전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불어로만 제공된다. 영문으로 번역된 프랑스의 조세관련 정보는 미국 6대 회계법인 중 Deloitte & Touche(<http://www.dtonline.com/lib/library.htm>) 및 Ernst & Young(<http://www1.ey.com/dbiworld.htm>)에서 제공하는 조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면 간략하게나마 제공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이곳에서는 프랑스 이외의 국가들에 대한 조세, 경제환경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3. 급속히 성장하는 아시아의 인터넷정부 -호주, 일본, 대만, 싱가포르

호주는 거리상으로는 우리에게 먼 나라이지만 인터넷을 통하면 너무나 가깝게 느껴진다. 호주정부는 각 연도의 예산자료를 호주 재무부(<http://www.finance.gov.au/budget>)를 통하여 제공하는데 현재 1996년 예산자료와 지난 2년간의 예산자료를 얻을 수 있다. 조세관련 정보는 호주의 Charles Sturt University에서 운영하는 사이트(<http://www.csu.edu.au/faculty/commerce/account/tax/tax.htm>)로 접속하면 각종 세무관련 정보 및 호주 조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일본의 대장성(<http://www.mof.go.jp/english/index.html>)도 재정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아직 내용이 빈약하고 많은 분야에서 영어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대만정부는 재무부나 국세청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정부홍보기관(<http://www.gio.gov.tw/info/yearbook/index.html>)에서 관리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대만의 거시적인 경제상황 및 국가재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일본과 대만의 조세제도에 대한 정보를 영문으로 얻고자 할 때는 위에서 소개한 미국의

Deloitte & Touche 및 Ernst & Young 회계법인에서 제공하는 조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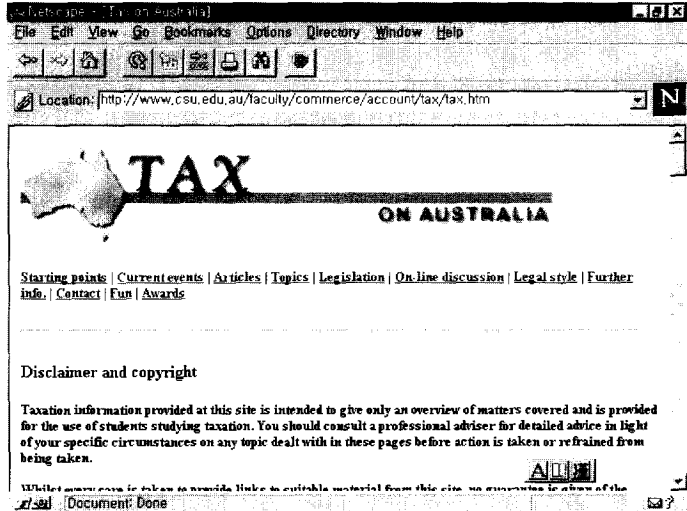
싱가포르정부는 다른 어떤 정부들보다는 체계적이고 상세한 재정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 예산실(<http://www.gov.sg/mof/budget/home1.htm>)에서는 예산관련 자료 및 예산편성 배경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국세청(<http://www.gov.sg/iras>)에서는 조세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 인터넷의 이정표 - 재정정보안내 사이트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전세계의 정치·경제 등 각 분야의 최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요즘 같이 인터넷의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여 정보 수신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상황에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기업 및 개인 사용자들이 특정 주제별로 관련된 사이트를 소개 및 연결 시켜주는 안내사이트를 만들어 놓았다. 재정관련 주제도 많은 재정학자,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및 일반 사용자들에 의하여 세계각국의 정부 및 조세제도

〈그림 3〉 호주 Charles Sturt University의 조세정보 사이트



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들의 주소를 모아 서 안내하는 사이트로 제공되고 있다.

미국 미시건대학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관련 인터넷정보(<http://www.lib.umich.edu/libhome/Documents.center/govweb.html>)도 주목할 만하다. 이곳에서는 미국 및 주요국 정부들이 만들어 놓은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정부관련 소식,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경제정보 및 통계자료 등의 주소와 간단한 설명, 그리고 그들 주소로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국의 조세관련 사이트들은 인터넷 종합정보 서비스회사인 Essential Links사에서 제공하는 조세정보 안내 사이트(<http://www.el.com/ToTheWeb/Taxes>)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대학, 연구소, 회계법인들이 인터넷상으로 제공하는 조세관련 정보들을 나열하여 누구든지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세무관련 소식, 주요국의 재정관련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Yahoo에서 제공하는 조세관련 주소목록(<http://www.yahoo.com/Economy/Taxes>)과 미국 북아이오와대학 Dennis Schmidt 교수가 정리한 Tax Sites Directory(<http://www.uni.edu/schmidt/tax.html>)에서도 조세관련 인터넷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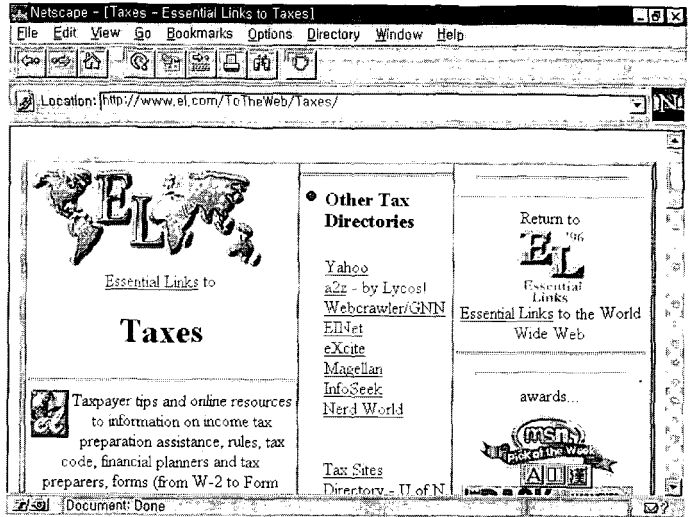
들을 소개하고 있다.

USENET를 이용하여 세계 다른 인터넷 사용자들과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재정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USENET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미리 주제를 정해 놓고 주제와 관련된 질문 및 답변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토론 내용들을 열람하여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현재 USENET에서는 1만 5천개 이상의 주제가 있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그 수가 다를 수도 있다. 재정관련 정보는 대부분 misc.taxes와 misc.taxes.moderated에서 토론되고 있고 세계 각국의 세무사들과 회계사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어 질문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 기타 재정관련 정보

각국의 예산 및 조세제도를 연구하다 보면 객관

<그림 4> Essential Links사의 조세정보안내 사이트



적인 비교와 경제현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국제기구에서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입확정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OECD(<http://www.oecd.org>)에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회원국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회원국에 대한 경제·재정·금융 및 조세제도에 관련된 상세한 자료들이 연간 350권 이상 출판되고 현재 총 2,500권 이상이 발행된 상태이며 이러한 서적들은 인터넷상에서 주제별 검색 및 주문을 할 수 있다. IMF(<http://www.imf.org>)와 Worldbank(<http://www.worldbank.org>)에서도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인터넷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IMF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국제 경제개발기구들의 인터넷 주소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IV. 우리나라의 인터넷 재정정보 현황

우리 정부는 현재 하이텔, 천리안과 같은 PC 통신을 통하여 많은 재정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은 아직 시작단계이다. PC 통신을 이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사용자가 PC 통신회사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대부분의 정보가 한글로 되


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정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정부전산관리소(<http://www.gcc.go.kr>) 등 몇몇 정부기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놓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정부기관에 대한 소개 정도로 한정되어 있어 재정학자 또는 납세자를 위한 정보들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V. 결론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종류는 많지만 국민들에게 정부가 어떤 일들을 어떤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제도 및 법률규정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 역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서비스를 좀더 발전시킨다면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재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재정정보가 될 것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러한 정보들이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신속하게 그리고 손쉽게 전달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개인컴퓨터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또한 우리 사회가 국제화되어 감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화사업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 정부도 하루 빨리

인터넷에 개방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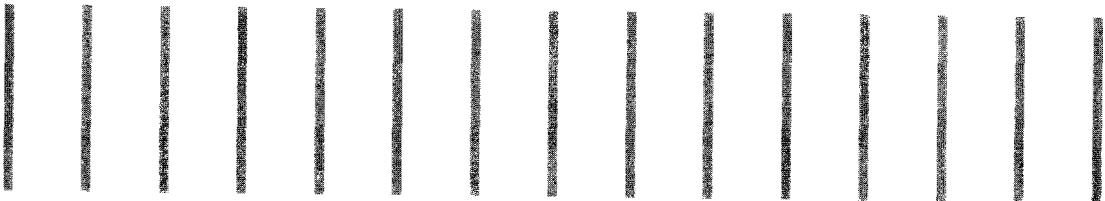
위에서 소개한 것들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유용한 재정정보들이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것이다. 끝으로 앞에서 언급된 각국의 재정관련 인터넷 주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산관련자료	조세관련자료
미국	1) http://www.doc.gov/BudgetFY97/index.html 2) http://www.census.gov/ftp/pub/govs/www/index.html	http://www.irs.ustreas.gov
캐나다	http://www.fin.gc.ca/budget96/docliste.htm	http://www.revcan.co/menu.html
영국	http://www.hm-treasury.gov.uk	http://www.open.gov.uk/inrev/irhome.html
프랑스	http://www.tresor/finances.fr/oat/us/somm-aires.html	http://www.dtonline.com/lib/library.htm
호주	http://www.finance.gov.au/budget	http://www.csu.edu.au/faculty/commerce/account/tax/tax.htm
일본	http://www.mof.go.jp/english/index.html	http://www.dtonline.com/lib/library.htm
대만	http://www.gio.gov.tw/info/yearbook/index.html	http://www.dtonline.com/lib/library.htm
싱가포르	http://www.gov.sg/mof/budget/home1.htm	http://www.gov.sg/iras
각국 종합	http://www.lib.umich.edu/libhome/Documents/govweb.html	1) http://www.el.com/ToTheWeb/Taes 2) http://www.uni.edu/schmidt/tax.html
국제기구	http://www.oecd.org http://www.worldbank.org http://www.imf.org	



정책흐름

1.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현황 및 실천과제
2. 최근의 경제동향과 경쟁력강화 시책 추진현황
3. 1996년도 3/4분기까지의 국제실적(잠정)
4.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5. 소득세 조사관리 방향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추진현황 및 실천과제

*이 자료는 11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보고회의에서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자료생산과는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입니다.

I. 추진경위

- 최근 들어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경기하강,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가중되었으나, 기본적으로 높은 비용과 낮은 효율구조에 의한 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되고 있음.
- 정부는 당면한 어려움의 극복을 위해 '경제안정 속에 기업활력의 회복' 을 목표로 한 「9·3대책」을 마련하였으며
 - 지난 10월 9일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정책의 중점을 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방안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정부의 경쟁력 강화시책을 실효성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장관과 민간 각계인사로 구성된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위원장 : 경제부총리)가 지난 11월 7일 제1차 회의를 가졌으며
 - 앞으로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논의할 계획임.

II. 주요 추진실적

1. 공공부문의 절약 및 생산성 높이기

- 11월부터 종이류 및 유류경비의 10% 감축, 해외출장경비 지출기준 하향조정 등 경상경비 지출절감 집행에 착수
-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시설의 민간이양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11. 2)과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대책」(11. 4)을 확정·시행

2.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

-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 등을 통한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유도하고
- 국산자본재 구입용 외화대출을 대기업에 대해서도 허용
- 공장용지 부담완화를 위해 대불·북평, 김천 구성단지 등 장기 미분양 공단용지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 공단개발부담금 등 8종의 부담금 면제(수도권 이외 지역)와 공장입지 등 규제완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중 (1997년 1월 시행)
- 물류비 절감을 위해 운수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 포함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안)을 마련중이며
- 「종합물류정보망」 시범서비스와 「물류표준마크제」 도입 준비
- 임금안정을 위해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성과급·능력급 임금제도로 전환되도록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중(12월까지 완료)

3. 창업활성화 및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기반 구축

- 벤처기업에 대한 장외시장 등록요건을 완화(9. 9)하고, 세법개정(안)에 스톡옵션(stock-option) 비과세조치 도입
- 정보통신·게임·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한 「정보통신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수립(11월중 완료예정)

4. 저축기반의 확대와 소비 건전화

- 물가안정 노력을 통하여 물가오름세 심리를 불식시키고 저축이 늘어날 수 있는 튼튼한 바탕을 조성
- 비과세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제도를 시행(10. 21)하고,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기업의 접대비 인정범위 축소

III. 핵심과제 실천계획

1. 기업의 금융비용부담 완화

- 자본재 구입용 상업차관 허용
- 금융기관을 통한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금년 수준으로 운용하고 상업차관·외화증권발행 등 기업의 직접

조달을 확대

- 자본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산기계를 50% 이상 구입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외 직접차입을 허용(1997년 1월 1일 시행)
 - 1997년중 20억달러 수준(도입기준)에서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하고, 대기업은 재무구조·국산기계 사용비율 등을 종합평가하여 도입 허용하되, 자금수요에 따라 규모확대 가능
- 1997년중 10억달러 범위 내에서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를 도입할 수 있도록 상업차관 허용. 단, 통화팽창 억제제를 위해 기존 외화 도입계획 범위 내에서 허용
 - 중소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은 종전대로 상업차관 계속 허용

○ 지방자치단체 현금차관 허용

-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SOC 투자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연간 5억달러 수준의 현금차관 도입 허용(1997년 1월 1일 시행)
 - 산업단지 불수처리시설 등 산업단지관련 핵심 인프라사업과 물류비의 현저한 절감과 직결되는 도로(관광단지 연계도로 포함)를 대상
 -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규제완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지방자치단체 우선 지원

○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위한 연·기금의 자금운용 개선

- 연·기금의 금리입찰을 금지하고 실적배당금전신탁에 대한 확정금리 보장 및 이면계약을 금지
-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치금리(현 10.37%) 수준으로 운용토록 유도하고, 다수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토록 함으로써 과도한 수신경쟁을 지양
-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신탁회사를 통한 주식투자를 촉진

2. 위임·위탁 규제사무의 정비

- 자치단체 또는 관련협회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총점검하여 중복 또는 실효성이 없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정비

- 1차로 우선 정비대상 427건에 대한 검토결과, 폐지 123건, 제도보완 51건 등 총 191건의 정비방안 마련

(1)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

- 전기용품 제조업 등록·신고제는 폐지하고 제품의 안전성 검사는 강화
- 사전적인 전기공사업자 수급한도제와 건설업자 도급한도제는 폐지하고 시공능력 공시제를 도입

(2) 중복규제의 단순화

- 일반화물 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등록사항은 공사시행인가 또는 건축허가시 검토되므로 폐지
-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폐지하고 공정안전보고서로 일원화

(3) 업계 자율실시로의 전환 또는 실효성 없는 규제 폐지

- 전기기술자, 통신기술자, 안전관련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보수교육과 건설업자 경영지도 및 경영자 연수교육을 폐지하고 업계 자율사항으로 전환
- 냉·난방 온도제한 준수에 관한 지도감독 폐지

(4) 관할조정으로 실효성 제고

- 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시설 등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업무를 시·군에서 지방환경청으로 이관

○ 연내에 관련법령 또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개선효과를 조기에 가시화

3. 의무고용제의 개선

○ 사회정책적인 목적이나 산업안전, 환경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고용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으로 전환

- 자격증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자발적인 유자격자 고용을 유도하되, 유자격자 고용이 어려운 기업에서는 종업원 중에서 지정된 관리책임자가 법정임무와 의무를 수행

○ 산업안전 및 환경관련분야의 경우 과중한 고용부담을 완화

- 법정의무고용 인원을 축소하고, 의무고용 면제대상사업장 범위를 확대
- 한 분야의 의무고용자를 채용하면 다른 분야의 의무고용자 채용의무를 면제해 주는 상호검직 인정범위를 확대
- 일정지역 내에서는 공동채용 허용범위를 확대
-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외부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 연내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시행

대상분야별 요약

구 분	대 상 분 야
- 자율고용으로 전환(13)	산업보건의, 조리사, 영양사, 식품위생관리인, 품질관리인, 계량기사, 열·연료관리자, 전기에너지관리자, 세척제위생관리인, 교통안전관리자, 안전운전관리자, 집단에너지관리자, 소음·진동환경관리인
- 과중한 고용부담완화(14)	보건관리자, 고압가스·LPG·도시가스·전기·산업·위험물안전관리자, 광산보안관리자, 화학류보안책임자,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대기·수질분야 환경관리인, 유독물·방화관리자
- 현행 유지(2)	장애인, 국가유공자

4. 정부부문의 생산성 향상

- 「턴키」 방식적용을 확대하여 공사관련 예산집행의 생산성을 10% 이상 제고
 - 앞으로 대형공사 중 설계·시공·입찰관리가 필요한 중요공사는 「턴키」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참여를 적극 유도
 - 주요대상 : 88고속도로 확장,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 건설, 울산신항 건설 및 대규모 재경지정리사업 등
- * 「턴키」 건수 : 1995년 24건, 1996년 33건, 1997년 50건 이상
 - 「턴키」 대상공사의 경우 계속비제도의 활용을 확대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
- 정부조직·인력의 감량관리, 경쟁체제 도입 및 행정경비 절감
 - 금년 말까지 단순기능인력과 현업판서인력의 연차별 감축계획(1997~2000)을 수립하고 항만시설운영, 청사경비·관리 등 민영화 또는 외부용역 가능분야도 발굴
 - 11월까지 개방형 임용확대를 위한 범정부적 직무분석을 완료하고, 12월부터 직위선정 및 자격요건 설정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광역화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리적 업무분담 체제 구축(1997.1 기본계획 수립후 시행)
 - 의례적·형식적 행사의 「격년제」 시행 등 행사비용 10% 절감
- 정부부문에 대하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개혁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성안하여 시행할 계획
 - 발전소 건설이나 공단개발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 등 아직 추진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도입 방안 마련

맺음말

- 새로운 세기의 경쟁은 과거와 견줄 수 없이 치열한 모습으로 이미 시작되고 있음.
 - 미국·일본 등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은 물론 아시아와 중남미, 그리고 동구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국가들이 경쟁력을 높이고자 피나는 변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동안 우리는 경쟁국보다 훨씬 높은 요소비용과 과도한 규제, 기업의 경영혁신 노력 미흡, 사회전반의 소비분위기 확산 등에 따라 경쟁력이 뒤떨어진 상황이므로
 - 이제부터 정부·기업·근로자·소비자 모두가 새로이 발상을 전환하여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합심 노력하는 것이 절실함.
- 앞으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추가과제를 발굴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솔선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반드시 선진경제로 도약하도록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음.

최근의 경제동향과 경쟁력강화 시책 추진현황

- 제2차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개최 -

※ 이 자료는 12월 6일 재정경제원에서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이며 자료 생산과는 재정경제원 경제기획국 종합정책과입니다.

I. 최근의 경제동향

〈경기〉

- 금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6.4%를 기록하여 1/4분기 7.9%, 2/4분기 6.8%에 이어 계속 둔화
 - 민간소비(6.0%)가 경기후퇴와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소득증가 둔화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 설비투자(8.8%)는 비교적 활발하였으나, 건설투자(4.7%)는 계속 부진

(단위: %)

	1995	1996.1/4	2/4	3/4	1/4~3/4(평균)
경제성장	9.0	7.9	6.8	6.4	7.0
민간소비	7.9	7.5	7.1	6.0	6.9
설비투자	15.9	4.3	4.3	8.7	5.6
건설투자	9.9	10.5	4.9	4.7	6.4

- 10월중 산업생산(10.8%)과 투자 및 소비관련 증가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등 4/4분기 경기도 급랭 가능성은 작으므로 연간성장률은 7%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

(단위: %)

	1996.1/4	2/4	3/4	10월
산업생산	8.6	7.3	8.0	10.8
국내기계수주	9.7	22.5	9.2	14.4
도소매판매	8.3	7.0	6.6	7.6

- 다만, 수출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경공업의 생산감소 현상이 지

속되어 체감경기는 지표상의 경기보다 훨씬 취약

	1996.1/4	2/4	3/4	10월
경공업생산(%)	-1.8	-1.4	-3.0	-2.5
매출액 경상이익률 (제조업, %) : (1995년 상반기) 4.2 → (1996년 상반기) 1.8				

<물가>

- 소비자물가는 3/4분기까지 상승세가 계속되었으나 지난 10월 이후 하락세(10월: -0.1%, 11월: -0.3%)로 반전되어 11월 현재 전년 말 대비 4.3% 포인트 상승
-작황 호조를 보인 무·배추 등 농산물가격과 가전제품 등 일부 공산품가격이 하락

	1995.11	1996.11
소비자물가(전년말대비, %)	4.2	4.3

- 앞으로 건전한 연말 소비분위기 조성 등을 통하여 금년도 물가는 당초 목표인 4.5%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

<경상수지>

- 금년 10월까지 경상수지적자는 19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84억 2천만달러)보다 그 규모가 크게 확대

	1995.1~10(A)	1996.1~10(B)	(B-A)
경상수지(억달러)	-84.2	-195.0	-110.8
무역수지	-51.2	-125.8	-74.6
무역외·이전수지	-33.0	-69.2	-36.2

- 11월중에도 수출(0.3%)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입(12.2%)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
-다만, 수출가격이 크게 하락한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수출은 11.6%의 증가세 시현

	1995.1~11	1996.11	1996.1~11
수출 (%)	32.8	0.3	4.1
(반도체 제외시)	26.5	11.6	8.8
수입 (%)	34.4	12.2	10.8
(반도체가격 16MD 기준, 개당): (1995년 11월) 50.5달러 → (1996년 11월) 9.5달러			

○ 이에 따라 금년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2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

〈임금 고용동향〉

○ 임금은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11%를 넘는 높은 상승세 지속

	1995.1~8	1996.1~8
임금(전 산업, %)	12.2	11.7
(제조업, %)	11.2	12.1

○ 실업률은 계속 2%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점차 기업들의 신규 고용수요가 줄면서 인력난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

	1996.1/4	2/4	3/4	10월
실업률(계절조정, %)	1.9	2.0	2.0	1.9
구인배율 ¹⁾ (전국, 배)	2.1	2.5	2.0	1.6

주: 1) 구인자수/구직자수

- ◇ 1996년의 우리 경제는 완만한 경기하강국면이 진행되는 가운데 성장·물가면에서는 비교적 건실한 실적을 올렸으나, 경상수지적자는 당초 전망을 크게 벗어난 모습을 보였음.
- ◇ 경상수지적자의 대폭적 확대는 경기순환과정에서 교역조건이 악화가 가세한 측면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경제체질이 약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9월 이후 집중적인 경쟁력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 다행히도 1997년의 대외여건은 올해보다 호전될 전망이며, 경쟁력강화 시책의 효과도 서서히 나타날 것이므로, 1997년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상승국면으로 전환될 것이 기대됨.
- ◇ 정부는 현재의 경제정책기조를 1997년도에 일관성있게 견지하여,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경상수지적자를 대폭적으로 줄여나가는 한편, 경기하강국면이 장기화되어 투자둔화, 고용감소 등 경제의 성장활력 자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1997년의 경제정책을 운영할 계획임.

II. 경쟁력강화시책 추진상황

1. 공공부분의 절약 및 생산성 높이기

(1) 정부 인력·조직의 감축 운용

- 단순기능인력 감축운용을 위해, 기능직 공무원 운영 실태조사(11. 4~11. 30) 결과를 바탕으로 12월중 감축계획 수립
- 중간감독기관 광역화 및 일선기관 통합을 위해 12월중 현황분석 및 외국과의 비교검토
- 현재 공공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의 민간이양을 촉진하기 위해 12월중 대상기능 발굴

(2) 공기업 경영효율화와 SOC 민자유치 활성화 추진

-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위해 담배인삼공사 등 4개 대규모 공기업에 대한 전문경영인 체제의 도입방안을 검토중(11.16 : 민관실무 작업단 구성)
-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적정수익성 보장, 정부 재정지원 근거 명확화 등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령 개정중(11. 27 : 입법예고, 12월중 개정 완료)

(3) 5개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한국수출, 서부, 중부, 동남, 서남) 통합을 위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11.20)

(4) 우정업무에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96.11.30. 국회 의결)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시행령 제정 완료

2. 기업의 경쟁력향상을 뒷받침

(1) 임금안정

-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사·정 토론회(12월 중순)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개편방안을 마련
- 1997년부터 개별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을 지원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노사관계개혁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 상정예정(12. 3 : 입법예고)

(2) 금융비용부담완화

- 자본채 구입용 상업차관과 지방자치단체 현금차관 허용을 위한 「상업차관도입인가 지침」과 「외국환 관리규정」 개정안 마련중(12월중 개정완료,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 연금 기금의 금리입찰을 금지하기 위해 12월중 「기금여유자금운용지침」을 제정 시행

(3) 공장용지부담완화

- 공단개발관련 8종의 부담금 면제(수도권 이외지역)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이 차질없이 진행중(연내 개정 완료)
 - 공유수면점용료 면제 : 공유수면관리법 개정 (11. 19 : 국회제출)
 - 공유수면개발부담금 면제 : 공유수면매립법 개정 (11. 19 : 국회제출)
 - 개발부담금 면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11. 20 : 국회제출)
 - 대체초지조성비 면제 : 초지법 시행령 개정(12. 12 : 차관회의 상정 예정)
 - 농지조성비 면제 : 농지법 시행령 개정
 -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 면제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12. 13 : 경제장관회의 상정 예정)
 - 대체조림비 면제 : 산림법 시행규칙 개정(12월중)
- 공단관리비 징수폐지, 도시형 업종제도 개선, 공장등록의무 규모조정(200m²→500m² 이상) 등 공장 입지 및 설립관련 규제완화, 공단내 국유지 임대시 공장건설허용 등을 위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제출(11. 20)
-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완화를 위해 세부시행기준을 마련하고, 12월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완료

(4) 물류비 절감

-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하여, 우선 정부기관 대형운송업체 대형화주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실시 (12. 19)
- 5대 권역별 물류기지 개발의 일환으로 금년 말까지 의왕 내륙 컨테이너기지를 완공하고, 부곡 복합화물터미널을 일부 준공

(5) 규제개혁 추진

- 법령의무고용제 개선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협회에 위임 위탁된 규제사무 정비를 위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예정

(6) 기업의 관세 부담완화

- 원광석 등 비경쟁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 무세화를 위한 「할당관세 운영규정」 개정(12월 중순 시행 예정)

(7) 정보통신 및 자본재 산업의 발전기반 구축

- 정보통신·게임·소프트웨어산업발전을 위한 「정보통신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마련(정보통신부 별도 보고)
- 자본재산업의 핵심기술 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12월중 시제품개발사업의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

(8) 소비건전화 추진

- 지난 11월 20일 발족한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좋은 식단」 정착과 음식물 쓰레기 20% 감축을 추진
 - * 참여대상음식점 : (종전)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업소 중심(약 5만개)→ (확대) 전체 음식점(약 43만개)
- 김소한 가정의례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12월중 건전가정의례모델을 개발 보급
 - * 건전가정의례 정착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11. 29)

- ◇ 「9·3경제대책」과 후속조치인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법령의 제·개정작업은 대부분 차질없이 진행중
- ◇ 기발표된 경쟁력강화시책 중 아직 시행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연내 조치 완료

1996년도 3/4분기까지의 국세실적(잠정)

※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세제실 조세정책과에서 11월30일에 발표한 「1996년도 3/4분기 국세실적(잠정)」의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 1996년 3/4분기까지의 국세잠정실적은 전년동기보다 12.7% 증가한 48조 7,541억원으로 예산대비 75.6%(추경(안)대비 75.0%)의 진도를 시현함.
- * 유류·담배 등에 대한 신규 교육세가 8월부터 징수됨에 따라 특별회계 국세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므로 총국세증가율은 예산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국세증가율은 예산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1. 1996년 3/4분기까지의 국세수입 현황

- 잠정 집계한 1996년 3/4분기까지의 국세 수입실적은 48조 7,541억원으로 작년보다 12.7% 증가하였으며
 - 예산대비 75.6%(추경(안)대비 75.0%)의 진도비를 나타내고 있음.
- 일반회계 국세는 예산증가율(11.2%)을 상회하는 43조 1,750억원(전년대비 12.0% 증가)이 징수됨.
- 특별회계 국세는 유류 등에 대한 신규 교육세가 8월부터 징수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예산증가율(32.6%)에 못 미치는 5조 5,791억원(전년대비 18.5%증가)이 징수되었으나, 연말까지는 호전될 것으로 보임.

1996년 3/4분기 국세실적(잠정)

(단위 : 억원, %)

	1996년 예산	1996년 3/4분기		진도비		
			(1995대비)	1995	1996	1996 ¹⁾
총국세 (일반회계국세)	644,680 (560,568)	487,541 (431,750)	12.7 (12.0)	76.2 (76.5)	75.6 (77.0)	75.0 (76.3)
내국세	486,375	372,887	9.6	76.6	76.7	76.5
교통세	47,704	36,071	37.2	78.0	75.6	75.6
관세	50,495	40,291	17.0	74.3	79.8	73.3
교육세	43,876	26,594	28.3	69.2	60.6	60.6
농어촌특별세	15,900	11,604	9.8	79.4	73.0	73.0

주 : 1) 추경예산(5,543억원) 감안시

〈분석〉

- 소득세(전년동기대비 11.1% 증가)는 일반회계 국세 증가율(12.0%)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법인세는 작년동기보다 4.6% 증가(1995년 실적대비 예산증가율 : 6.8%)하였음.
 - 법인세 원천분(전년대비 28.8% 증가)은 채권과세방식이 보유기간별로 변경됨에 따른 채권이자 원천세 조기징수 등으로 호조를 보임.
- 국내분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2.4% 증가하였고, 관세(17.0%)·수입분 부가가치세(12.0%)는 환율 상승(9월 평균 과세환율 : 824.2원/달러) 등으로 호조를 보임.

수입규모

(단위 : 억달러, %)

1996년 3/4분기	1995년 3/4분기	증가율
1,098	997	10.1

- 특별소비세는 일반회계 국세증가율 수준인 12.3%의 증가를 보임.

- 교통세는 전년동기대비 37.2% 증가하였으나 유류에 대한 교육세 신규 과세에 따른 출고조정으로 9월에는 15.3% 감소하였음.
- 주세는 소주·맥주 등의 상대적인 출고부진으로 작년대비 8.3% 증가에 머물고 있음.

주요 주류 출고량

(단위 : 천kl, %)

	1996년 3/4분기	1995년 3/4분기	증가율
소 주	583	567	2.9
맥 주	1,422	1,394	2.0

- 증권거래세는 세율인하(0.3% → 0.15%)와 주식시장의 침체로 1995년보다 40.3% 감소함.

(단위 : 천억원, 억원, %)

	1996년 3/4분기	1995년 3/4분기	증가율
거 래 금 액	1,059	1,153	-8.2
증권거래세	2,290	3,836	-40.3

- 교육세는 주류·담배 등에 대한 신규 교육세가 8월부터 납부되기 시작하여 예산증가율(46.6%)에 미달하는 2조 6,594억원이 징수(전년대비 28.3% 증가)되었으나
- 연말까지 실적이 점차 호전될 것으로 보임.

1996년 3/4분기 국세실적

(단위 : 억원, %)

	1996 예산 (A)	1996. 3/4분기 (B)		진도비 (B/A)	추경 ¹⁾ 감안시
			(1995대비)		
총국세	644,680	487,541	12.7	75.6	75.0
(일반회계 국세)	(560,568)	(431,750)	(12.0)	(77.0)	(76.3)
내국세	486,375	372,887	9.6	76.7	76.5
· 소득세	145,034	110,454	11.1	76.2	76.2
· 법인세	92,541	75,705	4.6	81.8	81.8

	1996예산 (A)	1996. 3/4분기 (B)		진도비 (B/A)	추경 ¹⁾ 감안시
			(1995대비)		
· 상속세	12,748	7,060	-3.7	55.4	55.4
· 부가가치세	160,205	122,719	12.2	76.6	73.9
· 특별소비세	30,932	23,818	12.3	77.0	81.8
· 주세	22,919	15,872	8.3	69.3	69.3
· 전화세	5,888	4,859	22.0	82.5	82.5
· 증권거래세	6,610	2,290	-40.3	34.6	87.7
교통세	47,704	36,071	37.2	75.6	75.6
관세	50,495	40,291	17.0	79.8	73.3
교육세	43,876	26,594	28.3	60.6	60.6
농특세	15,900	11,604	9.8	73.0	73.0

주 : 1) 5,543억원 증액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세제실 소비세제과에서 11월 6일에 발표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의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1.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골프장, 스키장, 경마장, 카지노 등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법상 허용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현재보다 30% 인상함.
2.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요건을 완화하여 본인과 가족의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면세를 적용함.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제장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

1. 골프장 등 과세장소 입장에 대한 과세강화

- 소비를 억제하고 입장요율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골프장, 스키장, 경마장, 카지노, 증기식당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현재보다 30% 인상함.

특별소비세 개정안

(단위 : 원, %)

대상	과세기준	현행	개정안	인상액 (교육세 등 포함시)
투전기장	1인 1회 입장	2,000	2,600	600 (858)
카 지 노	1인 1회 입장	50,000	65,000	15,000 (21,450)
	외국인	2,000	2,600	600 (850)
골 프 장	1인 1회 입장	3,000	3,900	900 (1,584)
증기식당	1인 1회 입장	10,000	13,000	3,000 (4,290)
스 키 장	입장료	10	13	3p
경 마 장	입장료	50	65	15p

- 주 : 1. 이들 업소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외에 골프장의 경우에는 교육세(특소세의 30%)와 농어촌특별세(특소세의 30%)가, 기타의 경우에는 교육세(특소세 30%)가 과세되며, 특별소비세가 인상되면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늘어나게 됨.
2. () 안은 특소세 인상에 따른 교육세 및 부가치세 증가액을 포함한 것임.

과세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연혁

	1977.7.1	1989.1.1	1994.1.1	1995.1.1
투전기장	500원	1,000원	2,000원	→
카지노				
내국인	15,000원	30,000원	50,000원	→
외국인	1,000원	2,000원		→
골프장	3,000원			→
증기식당	100%			10,000원
스키장	82.1.1부터 과세 10%			→
경마장	50%			→

과세장소 수와 입장인원

(단위 : 개소, 천명)

과세대상 (1996.5 현재)		입장인원		
		1994	1995	1996.1~5
카지노	12	617	642	210
		(-5.1)	(4.1)	(-16.2)
골프장	88	6,361	7,403	2,487
		(13.5)	(16.4)	(3.6)
증기식당	109	267	171	76
		(87.7)	(-35.9)	(0.5)
스키장	11	1,900	2,560	3,072
		(57.2)	(34.7)	(20.8)
경마장	2	2,122	2,589	1,157
		(-15.3)	(22.0)	(21.4)
계	222	11,267	13,365	7,002
		(11.5)	(18.6)	(12.5)

입장요금 비교

(단위 : 원, %)

	입장료 총액	순수 입장료	세금				기금
			계	특소세	교육세 ¹⁾	부가세	
카지노 (외국인)							
현행	2,860		2,860	2,000	600	260	10,000
개정안	3,718		3,718	2,600	780	338	(제주도)
인상액	858		858	600	180	78	
인상률	30		30	30	30	30	
골프장 (18홀)							
현행	66,000	52,473	10,527	3,000	1,800	5,727	3,000
개정안	67,584	52,473	12,111	3,900	2,340	5,871	3,000
인상액	1,584	1,584	900	540	144		
인상률	2.4	15.0	30	30	2.5		
증기식당							
현행	100,000	78,000	22,100	10,000	3,000	9,100	
개정안	104,390	78,000	26,390	13,000	3,900	9,490	
인상액	4,290	4,290	3,000	900	390		
인상률	4.4	19.4	30	30	4.3		
스키장 (1일)							
현행	30,000	22,928	5,572	2,293	688	2,591	1,500
개정안	30,983	22,928	6,555	2,981	894	2,680	1,500
인상액	983	983	688	206	89		
인상률	3.3	17.6	30	30	3.4		
경마장							
현행	200	100	82	50	15	17	18
개정안	224	100	104	65	20	19	20
인상액	24	22	15	5	2	2	
인상률	12.0	26.8	30	30	11.8		

주 : 1. 골프장 : 평일의 비회원 기준
 2. 스키장 : 성인 1일권 기준
 3. 경마장 : 파천 일반석 기준
 1) 농특세 포함

2.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면세요건 완화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는 장애인 본인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운전자(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면세적용

주 :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면세는 배기량 1,500cc 이하의 승용차로서 1인 1대에 적용

〈추진일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

-소득세 신고납세제도하에서 처음 시행하는- 소득세 조사관리 방향

* 이 자료는 국세청 직세국 소득세과에서 11월 27일에 발표한 「소득세 조사관리방향」의 내용입니다.

I. 신고납세제도하에서의 소득세 조사의 의의

- 지난 5월의 소득세 확정신고는 신고납세제하의 첫 신고임에도 전반적으로 납세자의 불편이나 행정상 시행착오없이 원활하게 집행되었음.
 - 이를 위해 신고납세제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등 새로운 세제 시행에 따른 소득세 행정의 기본체계를 전면 개편하였고
 - 특히, 소득세 신고기준을 폐지하여 납세자 스스로 사업 실상에 따라 성실신고하는 자율신고납세체제로 전환하였으며
 - 모든 납세자에게 우편신고를 안내하고 PC에 의한 신고접수를 하는 등 납세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신고관리에 역점을 두었음.
- 앞으로 소득세 신고납세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납세자별로 세원관리를 치밀하게 하고 신고후 엄정한 사후검증이 뒤따를 때에 가능한 것임.
 - 특히, 소득세 조사는 자율신고납세체제하에서 가장 중요한 사후검증 수단이므로 납세자별 신고상황을 정밀분석한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 신고의 자율성 보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스스로 성실신고하는 편이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새로운 소득세 조사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임.

II. 새로운 소득세 조사관리 방향

1. 조사대상자 선정 방법

- 조사대상자는 사업자별 신고성실도 분석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분석결과에 의해 객관적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로 하되, 납세자의 개인별 실상을 반영하는 각종 수동분석자료와 인별 세원관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심리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있게 조사대상자를 선정

- 신고성실도 분석방법은 사업자별 신고소득률 · 과거의 신고 수준 · 수입금액 신고추이 · 부가가치율 · 자료양성화 정도 · 소비성 경비 등 특정 계정과목 분석 · 실소득 수준의 지표가 되는 다양한 인별 세원관리자료 등 각종 성실도 판정요소와 신고유형 · 사업규모 · 업종특성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심리분석
 - 신고성실도 순위가 동일업종의 전사업자 중 하위그룹에 속하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
- 조사대상자 선정은 세원관리의 중요도, 세부담의 형평성, 조사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신고유형별 · 사업규모별 · 업종별 · 지역별로 상대적 균형 유지
 -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 대사업자 · 소비성 서비스업 등 중점관리업종은 조사인원비율을 높게 하고, 제조업 · 광업 · 수출업 등 생산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적게 선정

2. 조사에 앞서 자기시정기회 부여(自己是正機會 賦與)

- 신고성실도 분석결과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조사착수에 앞서 우선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여
 - 본인 스스로 지난 5월에 누락 신고한 소득세 신고내용을 이제라도 실제 사업실적에 따라 다시 수정신고하는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
 - 자기시정대상자에게는 조사에 앞서 10일간의 수정신고기간을 주고 이 기간 내에 성실하게 수정신고하면 소득세 실시조사가 면제됨을 우편으로 안내
- 자기시정기회를 부여받고도 수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사업실적과는 현저히 다르게 형식적으로 수정 신고 하였다고 판단되는 자는 소득세 실시조사대상으로 확정하여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사후검증하는 세무조사 실시
- 앞으로 국세청에서 세정선진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자기시정기회부여제도를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으로써, 조사를 하지 않고도 납세자간 세부담 불균형 시정을 위한 조사목적의 달성이면서
 -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는 인원을 크게 축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남은 행정여력을 세무조사가 꼭 필요한 상습적인 불성실신고자에게 집중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소득세 실시조사 실시

- 신고납세제도는 본래 납세자의 자율적인 신고납세 내용을 존중해 주는 제도이므로 세무조사는 필요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 금년도의 소득세 실시조사는 세무조사가 불가피한 일부 상습적인 불성실신고자 중심으로 실시하되
 - 조사대상인원 규모는 이러한 신고납세제의 기본 취지와 조사 행정력, 그간의 조사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전년보다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

- 지난해 소득세 조사대상인원은 1만 2천여명이었음.

- 다만, 신고성실도 순위가 특히 낮고 세금탈루혐의가 큰 불성실신고자 등에 대하여는 정밀세무조사를 실시
 - 이제 신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만큼 그에 상응하여 납세자의 책임도 강조되는 성실신고납세풍토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도 일단 세무조사대상으로 확정되면 성실신고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엄정한 정밀조사 실시
 - 조사를 받은 사업자는 추후 일정기간 동안 신고상황을 전산에 의하여 계속 사후관리
- 실시조사는 사업자 특성에 맞게 조사유형을 구분하여, 조사반 편성·조사기간·중점조사 항목 등에 차등을 두어 효율적으로 집행하되
 - 특히 「업종별 조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외형과 소득을 연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통합조사하여 중복조사를 배제하는 등 세무조사 행정을 선진화

4.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사면제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없이 사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상 지원

〈조사제외대상 예시〉

-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자
- 총수입금액의 대부분이 수출로 인해 발생하는 수출업자
- 재해 노사분규 또는 거래처의 거래 부도 등으로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
- 개업한 지 1년이 안된 신규 사업자(다만, 음식숙박업, 부동산 관련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중점관리대상자는 선정 가능)

5. 민주적인 세무조사 절차 준수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및 「조사연기신청」 등 민주적인 세무조사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
 - 세무조사 착수 7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하면서 조사연기신청,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자유로운 의견진술권, 조사를 받기에 적합한 장소의 신청, 과세적부 심사청구 및 불복청구권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

III. 소비생활 수준에 상응하는 소득세 조사관리 방향

1. 소비생활 수준에 비추어 신고소득이 낮은 자의 세원관리 강화

- 그 동안 국세청에서는 납세의무자별 세원을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소비생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각종 세원 정보자료를 단계적으로 수집하여 DB를 구축해 오고 있음
- 앞으로 신고납세제 시행을 계기로 근로소득 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개인사업소득자의 세부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 우선, 1995년 귀속분 신고소득은 적는데 소비생활 수준에 비추어 실 소득을 누락신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개인사업자를 소득세 조사대상 선정시 중점 분석

<예시>

- 고소득자만이 취득할 수 있고 높은 소비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고급주택·별장 등 고가재산 보유
- 최근에 고액의 부동산 취득
- 골프·스키·종합레저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을 다수 보유
- 사업목적 외의 해외여행 빈도가 잦고 고액의 해외여행경비 지출

2. 소비성 서비스업 등 과소비조장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특별관리

- 근래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반 소비생활의 고급화·호화사치 추세가 날로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국민 소비생활의 건전화 및 근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 국세청에서는 과소비조장 업소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정상 지원을 해오고 있음
- 앞으로 소득세 조사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과소비현상을 억제하고 외형과 소득을 연계관리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유통마진은 큰데 1995년 귀속분 신고소득이 특히 낮은 소비성 서비스업 등과 소비조장 업소와 취약업종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조사대상을 대폭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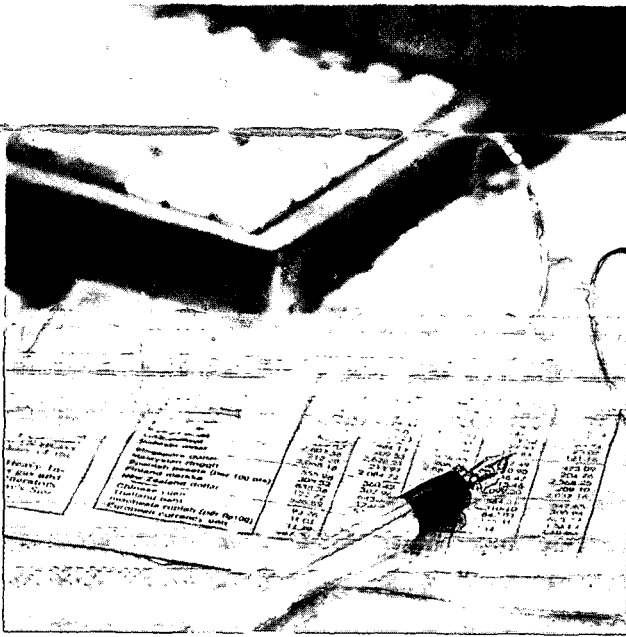
<예시>

- 고급유희업소, 대형 고급음식점
- 사치성 고가소비재 취급사업자(고급 모피류, 화장품, 고급 여성의류, 시계 및 귀금속, 안경, 가방, 고급 조명기구, 고급 가구, 고급 주류, 고급 냉장고 및 주방기구 등 유통마진이 큰 사치성 고가소비재 취급업소)
- 유명상품 기술제휴업체(의류판매점, 음식점)
- 골프·스키 등 고급스포츠용품

- 고급 여성의상실(의상연구소 등), 신부화장·신부드레스 대여점, 성형외과
- 고급위락시설, 골프연습장 등
- 서울 근교 등 대도시 주변의 유흥성 여관, 증기식당 등

3. 사업소득자의 소비성 경비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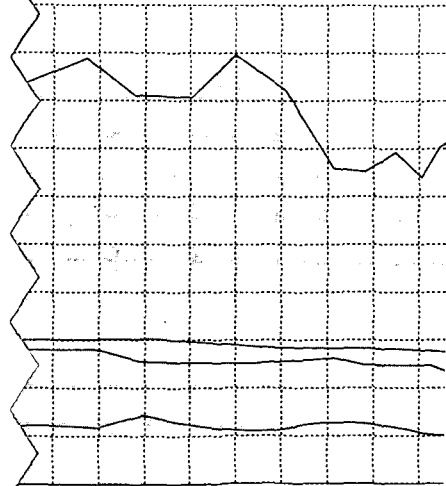
- 개인 사업소득자가 수입금액 양성화는 부진하면서 허위증빙서류나 업무 무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낮추어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원천적인 매출누락과 과대계상 필요경비를 정밀조사할 필요
- 특히, 소비성 경비 과다지출 사업자를 소득세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의 가공지출 여부, 임·직원의 사적 비용을 소비성 경비로 계상 여부,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의 적정 여부, 소비성 경비를 타 유사계정으로의 변칙 분산처리 여부 등을 중점 검토



재정통계

소득세면련 통계(II)

1. 업종별 표준소득률 조정
2. 양도소득세 부과
3. 국세입사 사무처리 : 이외선정
4. 국세입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
5. 세무소송
6. 소득세 감사실적



1. 업종별 표준소득률 조정

		종목수		각 연도 기본율 재조정 종목수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준소득률	
1987	합계	1047	1498	91
	축산업, 수렵업, 임업 및 수산업	40	45	8
	광업과 채석업	26	47	-
	제조업	522	623	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6	6	-
	건설업	31	40	1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139	385	33
	운수, 창고 및 통신업	53	44	3
	금융·보험, 부동산 매매업 및 사업서비스	75	108	17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53	183	23
부동산소득, 기타소득, 산림소득	2	17	2	
1988	합계	1048	1501	114
	축산업, 수렵업, 임업 및 수산업	40	45	27
	광업과 채석업	26	47	10
	제조업	522	628	28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6	6	-
	건설업	31	40	-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139	384	24
	운수, 창고 및 통신업	53	44	3
	금융·보험, 부동산 매매업 및 사업서비스	76	107	2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53	183	20
부동산소득, 기타소득, 산림소득	2	17	-	
1989	합계	1048	1513	69
	축산업, 수렵업, 임업 및 수산업	40	46	9
	광업과 채석업	26	47	6
	제조업	522	628	13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6	6	-
	건설업	31	40	1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139	394	25
	운수, 창고 및 통신업	53	44	1
	금융·보험, 부동산 매매업 및 사업서비스	76	107	3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53	184	11
부동산소득, 기타소득, 산림소득	2	17	-	

1. 업종별 표준소득률 조정(계속)

		종목수		각 연도 기본율 재조정 종목수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준소득률	
1990	합계	1048	1519	95
	축산업, 수렵업, 임업 및 수산업	40	46	1
	광업과 채석업	26	47	8
	제조업	522	628	33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6	6	-
	건설업	31	40	1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139	397	30
	운수, 창고 및 통신업	53	44	-
	금융·보험, 부동산 매매업 및 사업서비스	76	107	3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53	185	17
부동산소득, 기타소득, 산림소득	2	19	2	
1991	합계	1048	1560	190
	축산업, 수렵업, 임업 및 수산업	40	46	6
	광업과 채석업	26	47	10
	제조업	522	624	5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6	6	-
	건설업	31	40	-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139	438	88
	운수, 창고 및 통신업	53	44	-
	금융·보험, 부동산 매매업 및 사업서비스	76	111	22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53	185	9
부동산소득, 기타소득, 산림소득	2	19	1	
1992	합계	1196	1669	1669
	농업(축산업), 수렵업, 임업	32	19	19
	어업	9	24	24
	광업	27	32	32
	제조업	585	684	68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6	4	4
	건설업	40	43	43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168	458	458
	숙박 및 음식점업	22	49	49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1	66	66
금융·보험업	30	23	23	

1. 업종별 표준소득률 조정(계속)

		종목수		각 연도 기본율 재조정 종목수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준소득률	
1992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83	106	10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5	-	-
	교육서비스업	14	12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0	36	5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81	109	6
	가사서비스업, 기타소득, 산림소득	1	4	-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2	-	-
	합계	1196	1665	185
1993	농업(축산업), 수렵업, 임업	32	19	13
	어업	9	24	23
	광업	27	32	7
	제조업	585	683	4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6	5	1
	건설업	40	43	2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168	451	51
	숙박 및 음식점업	22	48	11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1	66	5
	금융·보험업	30	23	-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83	110	1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5	-	-
	교육서비스업	14	12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0	36	5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81	109	6
가사서비스업, 기타소득, 산림소득	1	4	-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2	-	-	
	합계	1196	1638	180
1994	농업(축산업), 수렵업, 임업	32	19	8
	어업	9	24	5
	광업	27	32	8
	제조업	585	686	6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6	5	-
	건설업	40	43	3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168	451	32

1. 업종별 표준소득률 조정(계속)

		종목수		각 연도 기본율 재조정 종목수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준소득률	
1994	숙박 및 음식점업	22	42	13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1	66	5
	금융·보험업	30	23	—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83	109	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5	—	—
	교육서비스업	14	1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0	34	2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81	88	37
	가사서비스업, 기타소득, 산림소득	1	4	—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2	—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양도소득세 부과

(단위: 백만원)

	인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양도소득특별 공제액	장기보유특별 공제액 ¹⁾	양도소득공제액	양도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1983	308,236	2,262,580	1,031,640	45,423	223,999	—	186,983	774,535	21,515	753,020
1984	213,075	2,526,870	1,207,600	62,653	254,831	—	187,906	813,880	32,024	781,856
1985	157,271	3,504,378	1,803,608	115,366	422,122	—	136,714	1,026,568	15,640	1,010,928
1986	159,327	3,350,647	1,921,607	126,369	360,072	—	142,660	799,939	14,719	785,220
1987	156,310	2,704,912	1,364,525	103,755	247,354	—	157,425	831,853	12,346	819,507
1988	150,454	4,348,752	2,222,617	127,903	350,736	—	135,421	1,512,075	77,574	1,434,501
1989	169,128	6,415,529	3,318,731	165,463	414,361	137,675	155,778	2,223,521	83,848	2,139,673
1990	230,747	11,528,622	6,240,187	298,685	733,807	235,811	225,738	3,794,394	183,428	3,610,966
1991	299,932	13,474,610	7,837,657	327,232	792,680	285,227	297,089	3,934,725	97,946	3,836,779
1992	243,439	15,463,502	8,407,803	437,007	1,103,838	553,202	264,100	4,697,552	112,979	4,584,573
1993	199,224	16,600,160	9,080,299	348,771	1,111,771	663,306	212,469	5,183,544	112,063	5,071,481
1994	249,686	19,238,653	10,677,272	363,789	1,180,391	766,775	239,410	6,011,016	105,833	5,905,183

	산출세액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	감면세액	토지초과이득 세액공제	결정세액	가산세	총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고지세액
1983	268,125	6,885	34,502	—	226,738	20,046	246,784	95,514	151,270
1984	286,159	6,545	67,186	—	212,428	20,575	233,003	89,909	143,094
1985	399,392	5,339	106,764	—	287,289	31,815	319,104	85,389	233,715
1986	324,599	5,299	137,938	—	181,362	20,115	201,477	67,386	134,091
1987	336,767	7,555	116,150	—	213,062	14,127	227,189	96,185	131,004
1988	606,893	21,254	167,039	—	418,600	20,600	439,200	237,595	201,605
1989	951,205	54,778	200,164	—	696,263	27,696	723,959	461,630	262,329
1990	1,705,504	78,459	335,382	—	1,291,663	46,232	1,337,895	926,581	411,314
1991	1,838,798	84,544	298,180	—	1,456,074	57,404	1,513,478	1,086,022	427,456
1992	2,091,454	60,981	584,209	638	1,445,626	63,890	1,509,516	1,025,081	484,435
1993	2,313,825	71,898	465,712	3,498	1,772,717	78,549	1,851,266	1,244,497	606,769
1994	2,643,005	118,163	502,248	2,280	2,020,314	109,499	2,129,813	1,443,788	686,025

· 주: 1) 1989년에 신설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

(단위:건, 백만원)

		요처리 건수			처리 건수				감세액	차년이월
		계	전년 이월	당년 접수	계	각하	기각	결정취소		
1979	종합소득세	1,531	40	1,491	1,514	503	623	388	654	17
	양도소득세	825	38	787	816	171	346	299	580	9
1980	종합소득세	1,521	17	1,504	1,480	454	617	409	802	41
	양도소득세	908	9	899	896	175	392	329	677	12
1981	종합소득세	1,746	41	1,705	1,598	495	639	464	1,526	148
	양도소득세	1,806	12	1,794	1,586	326	738	522	1,263	220
1982	종합소득세	1,728	148	1,580	1,639	501	707	431	1,313	89
	양도소득세	4,136	220	3,916	3,955	1,070	1,846	1,039	3,193	181
1983	종합소득세	1,267	89	1,178	1,197	458	488	251	782	70
	양도소득세	1,974	180	1,794	1,915	574	924	417	1,281	59
1984	종합소득세	976	70	906	911	394	366	151	700	65
	양도소득세	1,348	59	1,289	1,280	438	693	149	558	68
1985	종합소득세	933	65	868	901	423	371	107	568	32
	양도소득세	1,559	68	1,491	1,500	611	760	129	472	59
1986	종합소득세	755	32	723	724	341	330	53	598	31
	양도소득세	1,233	59	1,174	1,180	494	622	64	383	53
1987	종합소득세	425	31	394	421	181	219	21	193	4
	양도소득세	618	53	565	599	253	315	31	537	19
1988	종합소득세	229	4	225	221	107	90	24	310	8
	양도소득세	724	19	705	685	225	408	52	737	39
1989	종합소득세	213	8	205	208	85	104	19	99	5
	양도소득세	909	39	870	886	299	498	89	762	23
1990	종합소득세	264	5	259	251	100	127	24	538	13
	양도소득세	1,214	23	1,191	1,180	418	664	98	1,465	34
1991	종합소득세	290	13	277	280	111	144	25	131	10
	양도소득세	972	34	938	945	312	539	94	1,418	27
1992	종합소득세	289	10	279	282	126	134	22	308	7
	양도소득세	1,020	27	993	990	292	615	83	1,474	30
1993	종합소득세	495	7	488	477	196	226	55	1,420	18
	양도소득세	1,458	29	1,429	1,335	439	774	122	2,477	123
1994	종합소득세	285	18	267	275	25	202	48	1,960	10
	양도소득세	1,386	123	1,263	1,351	125	1,049	177	3,389	3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4.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

(단위: 건, 백만원)

		요처리 건수			처리 건수				감세액	차기아월
		계	전년 아월	당년 접수	계	각하	기각	결정취소		
1979	종합소득세	1,025	154	871	929	59	535	335	912	96
	양도소득세	718	104	614	659	35	438	186	433	59
1980	종합소득세	845	96	749	711	84	362	265	440	134
	양도소득세	572	59	513	496	47	346	103	645	76
1981	종합소득세	929	134	795	777	73	418	286	692	152
	양도소득세	1,063	76	987	805	77	530	198	931	258
1982	종합소득세	1,058	152	906	902	89	500	313	1,086	156
	양도소득세	2,449	258	2,191	2,197	217	1,435	545	2,793	252
1983	종합소득세	886	156	730	805	99	546	160	787	81
	양도소득세	1,547	252	1,295	1,479	123	1,142	214	1,053	68
1984	종합소득세	628	81	547	561	86	387	88	1,524	67
	양도소득세	1,039	68	971	961	88	783	90	397	78
1985	종합소득세	576	67	509	521	64	383	74	1,009	55
	양도소득세	1,298	78	1,220	1,203	125	1,015	63	281	95
1986	종합소득세	567	55	512	506	70	388	48	293	61
	양도소득세	1,222	95	1,127	1,106	99	950	57	386	116
1987	종합소득세	496	61	435	472	42	381	49	630	24
	양도소득세	809	116	693	741	81	626	34	244	68
1988	종합소득세	274	23	251	245	27	189	29	463	29
	양도소득세	1,093	68	1,025	871	43	767	61	757	222
1989	종합소득세	292	29	263	274	29	202	43	588	18
	양도소득세	1,649	222	1,427	1,512	116	1,245	151	4,482	137
1990	종합소득세	426	18	408	360	25	301	34	832	66
	양도소득세	1,968	137	1,831	1,804	134	1,546	124	3,495	164
1991	종합소득세	420	66	354	362	46	292	24	1,598	58
	양도소득세	1,649	164	1,485	1,583	143	1,332	108	3,977	66
1992	종합소득세	471	58	413	422	31	353	38	599	49
	양도소득세	1,782	66	1,716	1,600	105	1,339	156	6,166	182
1993	종합소득세	724	49	675	673	63	544	66	1,846	51
	양도소득세	2,364	182	2,182	1,855	191	1,485	179	3,836	509
1994	종합소득세	667	51	616	596	33	475	88	2,398	71
	양도소득세	2,580	509	2,071	2,329	125	1,828	376	9,991	25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5. 세무소송

(단위: 건)

		처리대상건수			당년도 종결건수				계류건수
		계	전년도 이월	당년도 제기	계	국승	국패	기타	
1979	종합소득세	143	53	90	42	13	10	19	101
	양도소득세	102	31	71	26	13	4	9	76
1980	종합소득세	170	101	69	77	28	31	18	93
	양도소득세	138	76	62	75	34	32	9	63
1981	종합소득세	184	93	91	36	16	13	7	148
	양도소득세	179	63	116	72	30	29	13	107
1982	종합소득세	227	148	79	77	38	26	13	150
	양도소득세	270	107	163	92	27	43	22	178
1983	종합소득세	278	150	128	98	40	37	21	180
	양도소득세	519	178	341	223	82	90	51	296
1984	종합소득세	298	180	118	126	42	64	20	172
	양도소득세	528	296	232	282	92	143	47	246
1985	종합소득세	321	172	149	117	40	65	12	204
	양도소득세	552	246	306	267	82	135	50	285
1986	종합소득세	331	204	127	93	28	45	20	238
	양도소득세	676	285	391	240	62	136	42	436
1987	종합소득세	372	238	134	146	42	83	21	226
	양도소득세	795	436	359	432	82	290	60	363
1988	종합소득세	317	226	91	118	23	64	31	199
	양도소득세	664	363	301	315	65	189	61	349
1989	종합소득세	275	199	76	142	74	68	-	133
	양도소득세	714	349	365	263	133	130	-	451
1990	종합소득세	216	133	83	47	31	16	-	169
	양도소득세	949	451	498	318	192	126	-	631
1991	종합소득세	276	169	107	69	46	23	-	207
	양도소득세	1,153	631	522	386	263	123	-	767
1992	종합소득세	303	188	115	108	76	32	-	195
	양도소득세	1,145	701	444	488	329	159	-	657
1993	종합소득세	372	203	169	153	99	54	-	218
	양도소득세	1,116	646	470	552	364	188	-	564
1994	종합소득세	387	218	169	146	87	59	-	241
	양도소득세	1,079	564	515	463	280	183	-	61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6. 소득세 감사실적

(단위: 건, 백만원)

	소득세		양도소득세	
	건수	세액	건수	세액
1979	1,957	1,397	342	840
1980	1,855	1,295	360	743
1981	1,478	1,909	569	1,690
1982	2,074	3,580	521	2,798
1983	1,587	4,621	460	2,687
1984	1,559	4,301	422	3,907
1985	1,597	5,591	365	2,698
1986	1,230	8,902	376	4,187
1987	1,876	11,099	463	12,503
1988	1,567	10,711	468	9,588
1989	1,339	15,147	438	14,717
1990	1,264	16,680	533	22,676
1991	978	18,833	446	19,172
1992	1,095	21,142	765	26,621
1993	1,390	34,783	744	47,501
1994	1,335	30,841	620	40,03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